出國報告（出國類別：考察）

韓國犯罪人社區矯治制度

服務機關：法務部保護司
姓名職稱：游明仁司長
鄭添成觀護人
柯嘉惠觀護人
張詩正觀護人
派赴國家：韓國
出國期間：**2014** 年 **10** 月 **27** 日至 **10** 月 **30** 日
報告日期：**2015** 年 **1** 月 **19** 日

摘　要

韓國自 1988 年保護觀察法（Probation Act）頒佈、1989 年開始實施少年犯保護觀察制度及 1997 年開始實施成年犯保護觀察制度以來，其社區矯治制度的內涵，主要以保護觀察（Probation & Parole）業務為主體，並搭配位置追蹤（電子監控）、國立法務醫院（治療監護）及法務福祉公團（更生保護）等資源，結合監控、治療與保護三個面向，形成整體架構。本考察團共參訪 6 單位，分別為：（1）我國駐韓國台北代表部、（2）韓國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3）首爾保護觀察所、（4）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5）國立法務醫院及（6）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

韓國犯罪人社區矯治制度之主要特色包括：（1）國家資源之大力投入，多數服務（包括電子監控及職訓安置等）皆由政府付費；（2）犯罪預防政策局係隸屬於法務部之三級單位，組織位階等同於韓國矯正本部（矯正署），依法獨立執行法院之判決及相關社區命令；（3）保護觀察制度採一元化設計（包含少年及成年犯），業務範圍並包含個案調查；（4）在假釋委員會之外，另設有保護觀察審議委員會，負責社區處遇措施之執行策略規劃、建議與審核；（5）在社會治安與人權保障之考量上，明顯以社會治安為優先；（6）電子監控中心採國營方式（非委外），中心所有員工皆為司法考試錄取之國家公務員；（7）犯罪人治療採住院制，法務醫院員工以僱用當地人為優先，當地人看病免費，藉以營造良好鄰里關係；（8）更生保護技能訓練採特色職訓，各支部發展不同專業課程，並與民間大企業結合緊密，包括設備贊助及人員雇用等，更生保護辦公室設計採 All-in-one 方式，整合職訓、安置及輔導場所之功能，並結合韓國土地住宅公社提供 1500 多戶小家庭優惠租屋住居支援，租金行情為低於市場價 1/3，並提供心理諮詢及外展服務。

在參訪心得方面，本報告並做出 12 點建議，分別為：（1）研議設置司法保護諮詢委員會；（2）研議我國社區矯治業務回歸獨立專業之可能性；（3）提昇觀護人對於個案再犯風險之科學化評估能力；（4）精簡純化觀護業務，降低案件負荷量，強化案件管理能力；（5）科技設備監控系統需 24 小時機房管理機制；（6）科技設備監控系統需加強資料管理及資安防護；（7）科技設備監控系統軟硬體需交由專業資訊人員處理；（8）科技設備監控命令違反之法律規劃及未來發展宜交由法務部統籌；（9）國立法務醫院與社區居民良好互動，提升接受度；（10）性犯罪者治療程序及相關實施方式之參考借鏡；（11）發展一站式的就業輔導服務模式；及（12）「更生」與「就業協助」結合地方資源，重質不重量，特色化經營。

關鍵字：社區矯治、觀護、更生保護、電子監控、韓國

目　次

摘要……2
圖次……5
表次……6

壹、前言……7
貳、考察目的……7
參、考察行程……8
肆、韓國法務部簡介……9
伍、韓國社區矯治制度簡介……13
　一、發展沿革……13
　二、業務內容……14
　　（一）保護觀察所……14
　　（二）保護觀察審議委員會……22
　三、法律依據……23
　四、案件負荷量……27
陸、參訪紀實……29
　一、行程一：拜會我國駐韓國代表部……29
　二、行程二：韓國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30
　　（一）機關介紹……30
　　（二）業務概況……34
　三、行程三：首爾保護觀察所……37
　　（一）機關介紹……37
　　（二）業務概況……40
　四、行程四：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52
　　（一）機關介紹……52
　　（二）業務概況……54
　五、行程五：國立法務醫院……64
　　（一）機關介紹……64
　　（二）業務概況……68
　六、行程六：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分部……83
　　（一）機關介紹……83
　　（二）業務概況……85
柒、參訪心得、結論與建議……98
　一、研議設置司法保護諮詢委員會……98

二、研議我國社區矯治業務回歸獨立專業之可能性……..……99
三、提昇觀護人對於個案再犯風險之科學化評估能力……100
四、精簡純化觀護業務，降低案件負荷量，強化案件管理能力……101
五、科技設備監控系統需 24 小時機房管理機制……..……102
六、科技設備監控系統需加強資安防護……102
七、科技設備監控系統軟硬體需交由專業資訊人員處理……102
八、為考量整體政策規劃，科技設備監控業務宜交由法務部統籌……103
九、國立法務醫院與社區居民良好互動，提升接受度……103
十、性犯罪者治療程序及相關實施方式之參考借鏡……103
十一、發展一站式的就業輔導服務模式……104
十二、「更生」與「就業協助」結合地方資源，重質不重量，特色化經營…104

附錄……106
一、保護觀察等相關法律……..……106
二、保護觀察等相關施行令……..……133
三、對於特定犯罪者的保護觀察與電子裝置附著（使用）相關法律…….133
四、對於特定飯則者的保護觀察與電子裝置附著（使用）相關施行令…133
五、性暴力犯罪者的性衝動藥物治療相關法律……133
六、性暴力法罪者的性衝動藥物治療相關施行令……133
七、法務保護福祉公團相關法律……134
八、社會服務相關法律……135

圖　次

圖 4.1　韓國法務部主要組織架構圖……10
圖 4.2　韓國法務部識別標誌……12
圖 5.1　韓國保護觀察所業務種類……15
圖 5.2　韓國各保護觀察所之分布圖……22
圖 5.3　韓國少年與成年保護觀察案件數量……28
圖 6.1　韓國犯罪預防政策局及保護觀察所組織架構圖……33
圖 6.2　首爾保護觀察所組織架構……37
圖 6.3　首爾保護觀察所保護觀察案件量……40
圖 6.4　近 1 年全韓國保護觀察案件量增減情形……40
圖 6.5　近 1 年首爾保護觀察案件量增減情形……40
圖 6.6　近 1 年全韓國社會服務案件量增減情形……41
圖 6.7　近 1 年首爾社會服務案件量增減情形……41
圖 6.8　韓國社會服務的政策走向……43
圖 6.9　近 1 年全韓國受講命令案件量增減情形……49
圖 6.10　近 1 年首爾受講命令案件量增減情形……49
圖6.11　近1年全韓國調查案件量增減情形……50
圖 6.12　近 1 年首爾調查案件量增減情形……50
圖 6.13　近一年全韓國調查案件量增減情形（以種類區分）……51
圖 6.14　近 1 年首爾調查案件量增減情形（以種類區分）……51
圖 6.15　韓國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的轄區分配……52
圖 6.16　電子管制之實施流程……55
圖 6.17　管制中心執行程序……56
圖 6.18　韓國位置追跡電子裝置……58
圖 6.19　韓國位置追蹤技術種類……59
圖 6.20　位置追跡電子裝置採無線充電方式充電……59
圖 6.21　國立法務醫院鳥瞰圖……64
圖 6.22　國立法務醫院作業流程……69
圖 6.23　心理評估實施流程……71
圖 6.24　治療命令執行流程……77

表 次

表 3.1 考察行程表……8
表 5.1 韓國社區矯治制度發展歷史……13
表 5.2 調查的類型、需求者及適用情形……19
表 5.3 受講命令/治療命令常見課程類型及內容……20
表 5.4 法律依據、適用犯罪人類型與判決刑期長度（以監督種類區分）……24
表 5.5 韓國保護觀察命令種類與案件負荷量……27
表 6.1 韓國保護觀察發展歷史……34
表 6.2 韓國社會服務執行法律依據……42
表 6.3 近 3 年韓國社會服務執行案件量……42
表 6.4 位置追跡監督對象統計表……54
表 6.5 位置追跡監督對象罪名統計表……54
表 6.6 國立法務醫院人力資源及設施……64
表 6.7 治療之對象及期程……68
表 6.8 近 5 年住院進行心理評估的人數……70
表 6.9 毒品戒癮處遇之人員及設施概況……71
表 6.10 戒酒訓練實施計畫……72
表 6.11 戒癮訓練實施計畫……73
表 6.12 性犯罪處遇之人員及設施概況……74
表 6.13 藥物治療之類型……75
表 6.14 治療藥物種類及品項……75

壹、前言[1]

韓國近年來透過政府組織再造，在犯罪人社區矯治制度上，在法務部（Ministry of Justice）層級下成立「犯罪預防政策局」（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透過保護觀察（即我國之觀護）、位置追跡（即我國之科技設備監控/電子監控）、保護立法、少年偏差行為預防教育、法律教育及法律與秩序推廣活動等措施之管理，並藉由協助犯罪人成功更生及預防再犯，來創造光明而健康的社會。在概念上，認為司法保護及扶助功能之發揮，即為犯罪預防之具體實現，而透過政策的擬定及相關立法，則為政府政策及管理部門之責任，此亦為「犯罪預防政策局」名稱之由來。本考察希藉由透過實地參訪，瞭解韓國對於犯罪人社區矯治之營運理念、政策規畫與實務做法，俾利於我國未來在促進更生人與社會重整、降低再犯及維護社會治安等司法保護相關業務之政策規劃及推動參考。

貳、考察目的

本考察之目的在蒐集及觀摩韓國犯罪人社區矯治制度，包含緩刑及假釋犯罪人管理、社區勞動服務、位置追跡、犯罪人藥物治療、更生人復歸社會與功能重整措施等政策規劃與實務做法，並藉由台韓經驗分享，建立交流聯繫管道，促進雙邊關係與我國政策精進作為。考察目標包括：

一、瞭解韓國保護觀察制度組織、業務內容與管理模式。

二、瞭解韓國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規劃、營運與執行方式。

三、瞭解韓國犯罪人藥物治療相關業務辦理情形。

四、瞭解韓國更生人復歸社會與功能重整措施。

五、瞭解韓國保護觀察所如何與矯正機構進行犯罪人銜接處遇。

六、瞭解韓國保護觀察所如何與業務鄰接機構（法務保護福祉公團、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及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等）進行橫向聯繫與合作。

[1] 本考察由於行程眾多，在報告之內容撰寫及整理上，分別由法務部保護司鄭添成觀護人負責我國駐韓國台北代表部、韓國法務部、韓國社區矯治制度、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首爾保護觀察所等章節之撰寫；臺灣高等法院檢察署柯嘉惠觀護人負責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及國立法務醫院等章節之撰寫；臺灣苗栗地方法院檢察署張詩正觀護人負責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章節之撰寫，並分別提出心得、結論與建議，並由鄭添成觀護人進行報告彙整，法務部保護司游明仁司長指導。感謝本考察案相關工作人員及協助單位之辛勞！

參、考察行程

本考察團考察行程共參訪 6 單位，參訪單位名稱及接待人分別為：（一）我國駐韓國台北代表部（Taipei Mission in Korea）代表石定大使、（二）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Central Electronic Monitoring Center）所長李英勉（Lee Young-Myeon）、（三）首爾保護觀察所（Seoul Probation & Parole Office）所長金英洪（Kim Young-hong）、（四）韓國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局長黃哲圭（Hwang Cheol-Kyu）及保護觀察科（Probation & Parole Division）科長孫外哲（Sohn, Yoi-Chull）、（五）國立法務醫院（National Forensic Hospital）院長李在禹（Lee Jae-Woo）及（六）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Korea Rehabilitation Agency, Incheon Branch）支部長劉完鍾（Liu One-Jong）。前述參訪單位除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為具準官方性質之機構外，其餘單位皆為韓國法務部（Ministry of Justice）所屬官方組織，考察行程表如表 3.1 所示。

表 3.1　考察行程表

日　期	行　程　摘　要	備　註
10 月 27 日 （星期一）	自桃園國際機場飛往仁川機場	
	拜會駐韓國台北代表部	石　定　大使
10 月 28 日 （星期二）	拜會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	李英勉　所長
	拜會首爾保護觀察所（含社會服務）	金英洪　所長
	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所長及首爾保護觀察所所長聯合晚宴	李英勉　所長 金英洪　所長
10 月 29 日 （星期三）	拜會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保護觀察科（矯正本部社會復歸科派員與會座談）	孫外哲　科長
	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局長午宴	黃哲圭　局長 孫外哲　科長
	拜會及	李在禹　院長

10 月 30 日 （星期四）	拜會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	劉完鍾　支部長
	自仁川機場返回桃園國際機場	

※以上考察行程，特別感謝駐韓國台北代表部林靖貴秘書協助接洽參訪事宜及提供行程安排諮詢建議。

肆、韓國法務部簡介

韓國法務部經過組織再造，在組織編制下轄七個主要局處，分別為：規劃與協調局、法律事務局、刑事事務局、犯罪預防政策局、人權局、韓國矯正本部及韓國移民本部等。有關韓國法務部組織架構[2]，如圖 4.1 所示：

一、規劃與協調局（Planning & Coordination Bureau）
- （一）政策發展辦公室（Office of Policy Development）
- （二）緊急安全規劃辦公室（Office of Emergency Safety Planning）
- （三）規劃暨預算辦公室（Office of Planning & Budget）
- （四）行政創新科（Creative Administration Division）
- （五）設施管理辦公室（Office of Facility Management）
- （六）資訊管理辦公室（Office of Information Management）
- （七）刑事司法資訊系統辦公室（Offic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 （八）檢察官規劃辦公室（Office of Planning Prosecutors）

二、法律事務局（Legal Affairs Bureau）
- （一）法律諮詢辦公室（Office of Legal Counsel）
- （二）法律事務科（Legal Affairs Division）
- （三）國際法律事務科（International Legal Affairs Division）
- （四）訴訟科（Litigation Division）
- （五）聯合法律事務科（Unification Legal Affairs Division）
- （六）商業法律事務科（Commercial Legal Affairs Division）
- （七）法律專業科（Legal Profession Division）

[2] 韓國法務部官方網站 http：//www.moj.go.kr/HP/ENG/eng_01/eng_0105.jsp

圖 4.1　韓國法務部主要組織架構圖

三、刑事事務局（Criminal Affairs Bureau）

（一）檢察服務科（Prosecution Service Division）

（二）刑事事務科（Criminal Affairs Division）

（三）公共安全事務科（Public Security Affairs Division）

（四）國際刑事事務科（International Criminal Affairs Division）

（五）刑事立法科（Criminal Legislation Division）

四、犯罪預防政策局（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一）犯罪預防規劃科（Crime Prevention Planning Division）

（二）法律暨秩序前瞻科（Law & Order Advancement Division）

（三）保護立法科（Protection Legislation Division）

（四）少年科（Juvenile Division）

（五）保護觀察科（Probation & Parole Division）

五、人權局（Human Rights Bureau）

（一）人權政策科（Human Rights Policy Division）

（二）人權支援科（Human Rights Support Division）

（三）人權調查科（Human Rights Investigation Division）

（四）婦幼人權科（Human Rights of Women & Children Division）

六、韓國矯正本部（Korea Correctional Service）

矯正政策團（Correctional Policy）

（一）綜合規劃科（General Affairs & Planning Division）

（二）職業訓練科（Vocational Training Division）

（三）社會復歸科（Social Rehabilitation Division）

（四）福利科（Welfare Division）

保安政策團（Security Policy）

（五）保安科（Security Division）

（六）調查分類科（Classification & Examination Division）

（七）健康照護科（Health Care Division）

七、韓國移民本部（Korea Immigration Service）

移民政策團（Immigration Policy）

（一）移民規劃科（Immigration Planning Division）

（二）入出境管制科（Border Control Division）

（三）護照暨住居科（Visa & Residence Division）

（四）調查暨執行科（Investigation & Enforcement Division）

（五）資訊科技策略暨管理科（IT Strategy & Management Division）

民族融合政策團（Nationality Integration Policy）

（六）移民政策科（Immigration Policy Division）

（七）民族科（Nationality Division）

（八）移民融合科（Immigrant Integration Division）

（九）難民科（Refugee Division）

此外，在願景（Vision）及任務（Mission）方面，韓國法務部所提出之願景為:「安全國家、快樂社會」(Safe Nation, Happy Society)；主要三大任務為:(一)建立法律與秩序(Establish law and order)、(二)提倡人權(Advocate human rights)及（三）提供法律服務（Provide legal services）。

圖 4.2　韓國法務部識別標誌

有關韓國法務部識別標誌（如圖 4.2），代表了其所成立之精神，其圖案組成與涵義分別為：

一、底部三根支持柱：分別象徵法務部是法律與秩序（law and order）、人權保障（protection of human rights）及國家繁榮（prosperity of nation）的基石。

二、中間的天秤：象徵公平且平等的執法（fair and equal enforcement of law）及法律的本體（body of law）。

三、上部的花與五片花瓣：整朵花象徵國家的繁榮、成長與活力（prosperity, growth and the vitality of the nation）；五片花瓣則分別象徵自由（liberty）、民主（democracy）、平等（equality）、正義（justice）及尊重人性（respect for humanity）。

伍、韓國社區矯治制度簡介

以下分就發展沿革、業務內容、法律依據及案件負荷量等四方面，分別說明韓國社區矯治制度之概況。

一、發展沿革：

韓國社區矯治制度的內涵，主要以保護觀察（Probation & Parole）業務為主體，並搭配位置追蹤（電子監控）、國立法務醫院（治療監護）及法務福祉公團（更生保護）等資源，結合監控、治療與保護，形成整體架構。

韓國的保護觀察（Probation & Parole）制度，係引進美國之做法所創立，在發展歷史上，主要里程碑為自 1980 年 12 月 18 日新設立法務部保護局，1988 年保護觀察法（Probation Act）頒佈，1989 年開始針對違反少年法、社會保護法之相關保護對象實施保護觀察（少年犯保護觀察制度）、1997 年保護觀察制度擴大實施至成年罪犯（成年犯保護觀察制度）、2008 年開始實施位置追蹤（電子監控）方案、2009 年開始實施罰金未繳納之社會服務制度、2011 年開始實施性衝動犯罪人藥物治療制度、2014 年 6 月則將電子監控制度實施對象擴大至強盜犯及兒童綁架犯。有關韓國社區矯治制度發展歷史，如表 5.1 所示。

表 5.1　韓國社區矯治制度發展歷史[3]

年份	大事紀
1980	● 法務部保護局 新設立
1984	● 法務部保護局 審查科更名為觀察科
1988	● **保護觀察法（Probation Act）頒佈**
1989	● **少年犯保護觀察制度開始實施** ● 少年案件量刑前調查開始運作 ● 觀察科保護觀察本部及全國 22 個保護觀察所設置完成開始營運
1994	● 性犯罪人保護觀察開始實施
1995	● 保護觀察管理系統（MSPP）開始建構

[3]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2014） Korean Probation & Parole Services.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1997	●	**成年犯保護觀察制度開始實施**
1998	●	家庭暴力犯罪人保護觀察開始實施
2001	●	受保護觀察者搜尋做法的引進
2003	●	密集保護觀察監督制度開始實施
2004	●	性販運犯罪人保護觀察開始實施
2005	●	John-School 計畫開始實施
	●	宵禁監督開始使用聲音確認裝置
2007	●	觀察科改編為保護觀察科
2008	●	**位置追蹤（電子監控）方案開始實施（性犯罪人）**
	●	上訴前、審判前、量刑前調查制度開始運作（成年犯）
2009	●	罰金不履行者**易服社會服務制度開始實施**
2010	●	電子監控方案適用對象的擴大（殺人犯及兒童綁架犯）
2011	●	性犯罪人**藥物治療方案開始實施**

二、業務內容：

如前所述，韓國社區矯治制度的內涵，主要以保護觀察業務為主體，本節就韓國保護觀察制度業務內容概況[4]，分別就保護觀察所（Probation & Parole Office）及保護觀察審議委員會（Probation & Parole Board）說明之。

（一）保護觀察所

韓國保護觀察所的業務種類，主要有犯罪人監督、電子監控、藥物治療命令、

[4]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2014） Korean Probation & Parole Services.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調查、受講命令/治療命令及社會服務命令等六大項，如圖 5.1 所示，分別簡述如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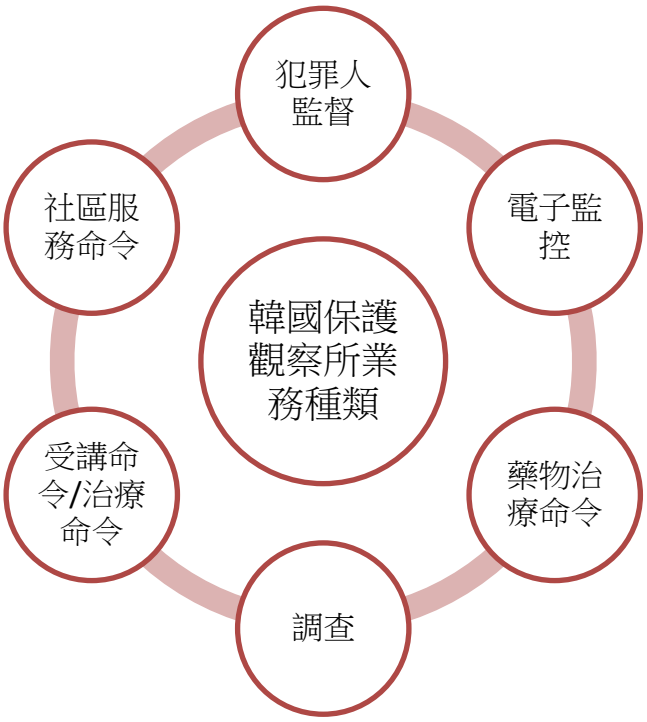

圖 5.1　韓國保護觀察所業務種類

1. 犯罪人監督

為了有效預防再犯，保護觀察官透過與犯罪人經常性的接觸（contacts）與家庭訪視（home visits），來掌握其日常活動與生活狀況，監督並確保個案的行為表現順從應遵守事項；並在在犯罪人違反規定時，撤銷緩刑或調整其保護處分之內容。

保護觀察官為了協助個案重新融入社區，會提供其復歸正常社會生活之服務，如職業訓練、協助就學、就業與安置、或經濟協助等。

保護觀察應遵守事項，可區分為一般應遵守事項與特殊應遵守事項二種，其中「一般應遵守事項」是每位個案皆需遵守的標準規定，「特殊應遵守事項」則是經由法院判決、保護觀察審議委員會（Probation & Parole Board）、或司法精神委員會（Forensic Psychiatry Board）所規定，反映出該個案所具有之獨特需求（need）與風險（risk）。分述如下：

（1）一般應遵守事項：

- 有穩定的工作，實際住居所與登記資料一致。

- 保持善良品性，不得與從事犯罪活動傾向之人往還。
- 忠實遵守保護觀察官之諭知事項。
- 住居所更動時，需向保護觀察官報告；欲從事國內外旅遊，時間達 1 個月（含）以上時，需事先經由保護觀察官核准。

（2）特殊應遵守事項，例如：

- 遵守宵禁規定。
- 禁止進入特定區域或地方。
- 禁止接觸特定對象，如被害人。
- 對於犯罪所造成的損害提供修復或回復原狀之努力。
- 遵守限制住居規定，尤其是無固定住址或居無定所者。
- 禁止從事賭博活動。
- 不得酗酒。
- 禁止使用成癮物質，如非法藥物。
- 依照保護觀察官指示，接受藥物檢驗，以提交物質濫用評估報告。

2. 位置追跡（電子監控）

位置追跡的目的在對於高再犯危險之犯罪人，如性侵害犯、殺人犯及兒童綁架犯，實施 24 小時的行蹤位置掌握，並透過保護觀察官對於個案的嚴密監督與輔導，來預防犯罪人再犯。

在實施期間方面，位置追跡命令的執行可區分為下列四種類型：

（1）刑期終結後

- 判決最高刑期為死刑或終身監禁：10-30 年
- 判決最低刑期為 3 年（含）以上：3-20 年
- 判決最低刑期為 3 年以下：1-10 年

※被害人年齡若低於 13 歲：則上述最低監控時間乘於 2 倍

（2）緩刑：保護觀察期間內（最多 5 年）

（3）假釋：假釋期間

（4）監護機構假釋放者/精神治療拘留所執行終結者：保護觀察期間內（最多 3 年）

在位置追跡執行的同時，法院、保護觀察審議委員會、或司法精神委員會會針對個案所具有之獨特需求（need）與風險（risk），對受監控人諭知特殊應遵守事項，例如：

- 特定時間不得外出。

- 禁止進入特定區域或地方。
- 遵守限制住居規定。
- 禁止接觸特定對象，如被害人。
- 配合完成特定治療方案（最多 500 小時）。

此外，檢察官在考量個案是否須向法院申請電子監控命令，或認法院電子監控命令有調整之必要時，得向保護觀察官提出起訴/上訴前調查（Pre-Petition Investigation）之需求，並由保護觀察官提供該個案如犯罪模式、與被害人關係、心理特質、再犯風險評估等資料，作為起訴/上訴之參考。

3. 藥物治療命令

對於因精神疾病而犯罪、藥物成癮（如麻醉藥品、酒精或其他藥物等）及偏差性疾患者，由於具高度再犯風險且需要特別教育，則法院基於保障社會大眾安全的原則，可以藉由治療命令，令旨揭個案接受治療及提供保護，以預防再次犯罪。

在性犯罪防治方面，藥物治療命令的目的在於，對於 19 歲（含）以上、被害人在 16 歲以下、經性侵害犯罪判決確定之性偏差加害人實施藥物治療。期藉以防止進一步再犯性犯罪，並促進個案與社區之重整。

性犯罪藥物治療所採取的措施，係透過法院的命令，對於身陷性偏差疾患困擾的性犯罪人，協助其能夠控制自身的異常性需求或性衝動；方式是透過施予賀爾蒙抑制劑，在一段時間內降低個案的性偏差傾向，使其得以過正常的生活。接受藥物治療命令之個案，需同時進行心理矯正方案，如認知行為治療等，以使治療方案產生最大療效。

在實施程序方面，首先由檢察官提出申請，申請前該個案必須先經過精神科醫師的臨床診斷（必須親自問診，不可由書面資料診斷），提供該個案之身心狀況評估報告，並依據個案疾病之輕重程度診斷，提供不同療程長度建議，檢察官必要時亦得向保護觀察官提出起訴/上訴前調查之需求，以協助法院做妥適之決定。

其次，若經由法院裁定藥物治療命令認為必須接受治療者[5]，則該藥物治療不需經個案同意，治療期間個案必須同時接受保護觀察監督及強制住院，

[5] 性犯罪藥物治療者有二種來源：一為經判決確定且醫院認為其應該接受治療者，此類型需經個案同意；另一種則為經法院裁定藥物治療命令，令其必須接受治療者，此類型不需經個案同意。

治療命令時間最多可至 15 年[6]。

最後，藥物治療命令的執行，則由保護觀察官負責，並自個案服刑（或監護）完畢出獄前（或離開治療監護所前）2 個月開始實施，藉以判斷治療處方對於該個案是否合適，以及確認、評估治療副作用之狀況。在治療療程上，藥物採注射方式，注射頻率分為每 1 個月、3 個月、6 個月定期施打性賀爾蒙抑制劑。開始治療前會先瞭解個案之身體狀況，治療過程中亦會隨時追蹤其身體狀況，對個案進行高密度的身體檢查，如有異常狀況會適度給予釋毒劑，待狀況減輕後再繼續進行治療。

在治療命令即將結束之後期，出院準備分為二階段，首先由國立法務醫院多位醫生組成審查委員會，對受治療者之再犯機率、家庭支持功能、社會適應性等進行評估；其次，個案的評估資料會送至法務部，由法官、檢察官、宗教人士等所組成之小組會議，決定個案是否可以出院。

個案出院後，後必須進行追蹤治療，每月至少 1 次，檢查賀爾蒙治療藥劑的濃度是否能對該個案有效發揮效果，後隨時間頻率逐漸減低，出院之個案需至指定之大學教學醫院，定期接受注射。性犯罪藥物治療並必須搭配心理治療（如認知行為治療）一起實施。

韓國接受性犯罪藥物治療者目前出院者有 7 人，均已出院約 2 年上下，尚無發現再犯之情形，治療期間主要發現之副作用為骨質疏鬆症及關節疼痛等。在經濟成本方面，每人每年在藥物部分之花費，約韓幣 500 萬元（合台幣 14 萬元），全數均由政府負擔。

4. 調查

保護觀察官會受理來自法院或檢察官之需求，透過科學化及客觀之方法，進行犯罪人上訴前、決策前或量刑前之調查，針對個案之人格特質、成長背景等資訊進行蒐集及研究。調查報告的相關資料會提供給法院或檢察官，藉以使法院社區判決的內容更具妥適性，或使檢察官藉以做為對法院電子監控及藥物治療命令的上訴依據，此外，調查報告同時也是保護觀察本身的重要參考資料。關於調查的類型、需求者及適用情形，如表 5.2 所示。

調查的內容，包括個案之人格特質、成長背景、心理狀態、犯罪動機、職業狀況、居住環境、生活狀況、來往對象、悛悔表現及程度及再犯風險等。

[6] 若個案為監護機構假釋放者或精神治療拘留所執行終結者，則治療命令期間不得超過保護觀察期間（最多 3 年）。

在調查方法上，主要有：

- 令個案至保護觀察所接受約談、入監進行訪談、家庭訪視、或實施心理測驗等。
- 訪談個案之家屬、其他關係人、共犯、或被害人，必要時可至犯罪現場進行調查。
- 對於所蒐集到的個案資料進行查證及確認，如犯罪前科記錄、住居所登記證明、家庭成員登記證明等。
- 對於所蒐集到的個案資料進行評估與分析，如社區處遇紀錄、機構處遇紀錄、醫藥紀錄、學業成績紀錄等。

表 5.2　調查的類型、需求者及適用情形

類型	需求者	適用情形
量刑前調查 Pre-Sentence	法院	對於一般刑事案件之保護觀察、社會服務命令、受講命令/治療命令、或電子監控命令認有必要性
起訴/上訴前調查 Pre-Petition	檢察官	對於法院電子監控命令、或性衝動藥物治療命令之申請或調整認有必要性
裁決前調查 Pre-Ruling	法院	對於家庭暴力、性販運、或少年保護案件認有調查必要性
決策前調查 Pre-Decision	檢察官	對於少年刑事案件，如移轉至少年法庭、起訴或緩起訴之決策判斷，認有必要性
環境調查 Environment	矯正機關首長	通常用於受刑人個案管理、環境改善、假釋審查資料、或特定安置機構假釋放之情形

5. 受講命令/治療命令

受講命令/治療命令主要實施對象為非法藥物濫用、酒駕/危險駕駛、家庭暴力或性暴力經判決確定者，由於此類犯罪人被認為具心理問題、扭曲認知及問題行為模式，而有高度再犯之虞。受講命令/治療命令則要求此類個案在特定時段參加教育或治療課程，提供專業技術的介入，課程內容設計旨在矯正其犯罪態度與不良行為，並藉由促進個案本身的責任感或人際技巧，來發展其社會適應性，以預防再犯。常見的教育/治療課程類型及內容，如表 5.3 所示。

表 5.3　受講命令/治療命令常見課程類型及內容

方案類型	主要內容
安全與守法駕駛者教育	● 經常性危險駕駛者酒癮治療 ● 瞭解車禍嚴重性與行為所造成傷害 ● 矯正不良駕駛習慣 ● 交通法規教育
家庭暴力治療	● 提昇家庭暴力的犯罪行為敏感度與責任感 ● 改變家庭暴力的認知扭曲 ● 由於憤怒、壓力或飲酒等因素而導致暴力行為，習得因應策略
性暴力治療	● 改變與性別有關的認知扭曲 ● 學習因應策略與社會技巧 ● 提昇對於被害人的同理心
物質濫用治療	● 提昇對於藥物濫用在身體、心理及社會危害性之敏感度 ● 學習非法物質戒斷症狀的因應策略 ● 強化遠離藥物的動機

韓國的受講命令執行，較為著名之方案為 John-School 計畫，此計畫係一種以初犯性交易仲介為實施對象之再犯預防方案。John-School 是一種轉向措施，當檢察官對於初犯性交易仲介的被告，決定給予緩起訴時，可藉由附條件緩起訴讓旨揭被告參與此方案，目標是預防再犯。John-School 是一個為期一日 8 小時的教育課程，在保護觀察所實施，參與對象必須自願同意，課程內容主要包括性交易的法律處罰及風險、前性工作者的經驗分享、性交易對生理及心理所造成的影響等。如果初犯性交易仲介的被告未完成課程，則將由檢察官起訴。

6. 社會服務命令

社會服務係指犯罪人需在一段期間內、無償地提供具社會有益性的工作，是一種監禁替代措施，主要實施對象是因財務困難而無力繳納罰金之犯罪人，主要程序係由當事人向檢察官申請（罰金繳納期限 30 日內），經法院判決後所下命令（履行時數最多 500 小時），並交由保護觀察官執行。社會服務命令提供犯罪人一個機會，讓其得以懺悔與贖罪，償還對於社區的責任，修復自身犯行所造成的損害，並在執行過程中獲得自我實現感。

在執行方法上，社會服務的履行時間以一日 9 小時計算，惟為了兼顧個案的工作，履行的時間可以彈性調整，如利用週末假日執行，或切割為較小

的時段，並分散在 2 至 3 日的週間日來執行。

社會服務的工作內容，包括協助身心障礙人士、環境清潔、農場服務或協助災後復原工作等，通常保護觀察官會依據犯罪人本身的專長與能力，來擇定其服務的工作項目，而非由個案自由選擇。常見的社會服務工作內容包括：

- 社會弱勢家庭房屋修繕計畫：如為身心障礙人士或獨居老人等，提供更新壁紙、粉刷油漆或修繕地板等工作。
- 社會福利機構協助：如對居住於社會福利機構的身心障礙人士或行動不便老人，提供照顧與陪伴服務，並協助機構的其他工作。
- 社區友善活動：在農忙季節，協助農夫或農場；或在水災或雪災等天然災害後，協助居民減輕工作量及災後復原等工作。
- 自然保育活動：河川清潔、生態重建等工作。
- 公共機構協助：如對公共運動中心進行整理、修繕與維護工作，古蹟或歷史場所協助修復，資源回收場協助等工作。

◎ 韓國共有 56 個保護觀察所[7]（含 18 個本部及 38 個支部）

[7] 相當於我國各地方法院檢察署之觀護人室

有關韓國各保護觀察所之分布狀況（含本部及支部），如圖 5.2 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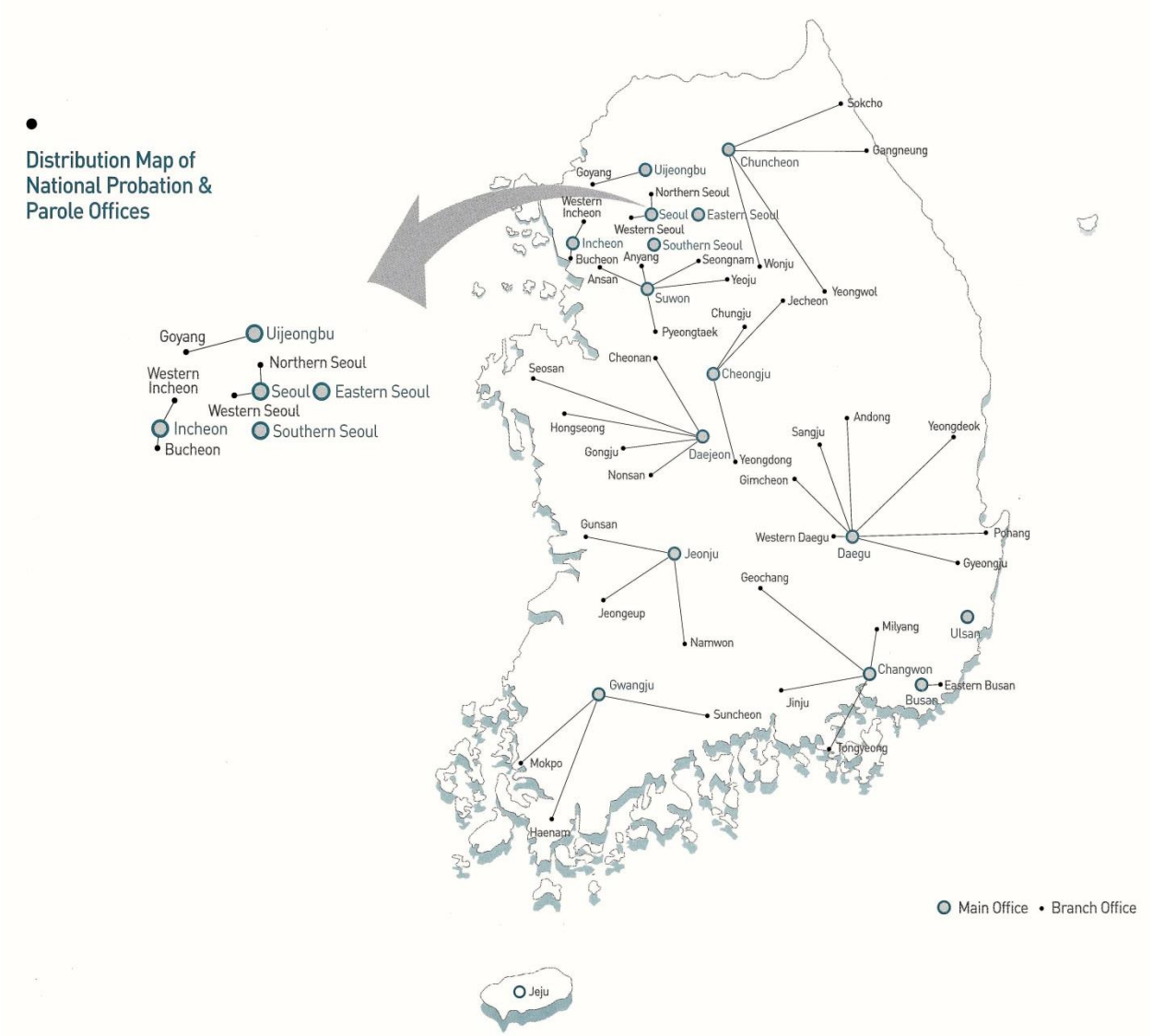

圖 5.2　韓國各保護觀察所之分布圖

（二）保護觀察審議委員會（Probation & Parole Board）

保護觀察審議委員會是一種具有學術性質的行政指導單位，是具有準司法功能的官方組織，由韓國法務部所成立並運作，目的在對保護觀察相關業務進行審查及提供建議。

韓國保護觀察審議委員會全國共計 5 個，分別位於首爾特別市和其他四個直

轄市（與高等檢察署位置相同的 5 個城市），分別為首爾（Seoul）、釜山（Busan）、大邱（daegu）、光州（Gwangju）及大田（daejeon）。保護觀察審議委員的主要職責與功能為：

- 假釋的審核與撤銷
- 少年矯正機構暫時釋放的審核與撤銷
- 保護觀察提早終止（early discharge from probation）的審核與撤銷
- 保護觀察中止（probation suspension）的審核與撤銷
- 假釋者不定期刑的終止決議
- 判斷成年受刑人接受保護觀察的必要性
- 位置追跡（電子監控）命令及藥物治療命令的審核與撤銷
- 成年受刑人釋放前調查與建議

保護觀察審議委員會的人數包括主席在內，通常維持在 5 至 9 人，主席由法務部指派高等檢察署的主任檢察官或檢察官擔任，成員則一般為法官、檢察官、教導所所長（典獄長）、保護觀察官及專家學者等擔任。

三、法律依據：

有關韓國社區矯治制度之實施法律依據、適用犯罪人類型與判決刑期長度，以保護觀察、社會服務命令、受講命令、位置追跡命令及藥物治療命令等監督種類進行區分，如表 5.4 所示。

表 5.4　法律依據、適用犯罪人類型與判決刑期長度（以監督種類區分）[8]

監督種類	法律依據	適用犯罪人類型	判決刑期長度
保護觀察監督（觀護監督）	刑法 Criminal Act	● 一般犯罪者	● 緩刑：緩刑期間內（1-5 年） ● 假釋：假釋期間
	少年法 Juvenile Act	● 少年偏差行為者	● 短期保護觀察：1 年 ● 長期保護觀察：2 年 ● 少年矯正機構暫時釋放：6 個月-2 年
	精神治療與監禁法 Psychiatric Treatment and Custody Act	● 監護機構假釋放者 ● 精神治療拘留所執行終結者	● 3 年
	性暴力處罰特別法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 性犯罪者	● 緩刑：緩刑期間內（1-5 年）
	家庭暴力處罰特別法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性販運及仲介相關行為處罰法 Act on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Sex Trafficking and Associate Acts	● 家庭暴力犯罪者 ● 性販運犯罪者	● 保護處分：最長 6 個月
	保護觀察所轉介規則 Rules of Referral to Probation and Parole Office	● 附條件緩起訴者	● 第 1 級：1 年 ● 第 2 級：6 個月

[8]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2014） Korean Probation & Parole Services.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社會服務命令	刑法 Criminal Act	● 一般犯罪者	● 緩刑：最多 500 小時
	性暴力處罰特別法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 性犯罪者	● 緩刑：最多 500 小時
	家庭暴力處罰特別法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 家庭暴力犯罪者	● 保護處分：最多 200 小時
	少年法 Juvenile Act	● 少年偏差行為者	● 保護處分：最多 200 小時
	性販運及仲介相關行為處罰法 Act on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Sex Trafficking and Associate Acts	● 性販運犯罪者	● 保護處分：最多 100 小時
受講命令（法治教育命令）/治療命令	兒少性犯罪防制法 Act on Child/Juvenile Protection from Sex Offenses 性暴力處罰特別法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 性犯罪者	● 罰金、緩刑、徒刑：最多 300 小時
	刑法 Criminal Act	● 一般犯罪人	● 緩刑：最多 200 小時
	家庭暴力處罰特別法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 家庭暴力犯罪者	● 保護處分：最多 200 小時
	性販運及仲介相關行為處罰法 Act on Punishment of Intermediating Sex Trafficking and Associate Acts	● 性販運犯罪者	● 保護處分：最多 100 小時
	少年法 Juvenile Act	● 少年偏差行為者	● 保護處分：最多 100 小時

位置追跡命令（電子監控命令）	特定犯罪人位置追跡法 Act on GPS Tracking of Specific Offenders	● 性犯罪者 ● 兒童誘拐/綁架者 ● 殺人犯罪者	● 刑期終結後 （1）判決最高刑期為死刑或終身監禁：10-30 年 （2）判決最低刑期為 3 年（含）以上：3-20 年 （3）判決最低刑期為 3 年以下：1-10 年 ※被害人年齡低於 13 歲：上述最低監控時間乘於 2 倍 ● 緩刑：保護觀察期間內（最多 5 年） ● 假釋：假釋期間 ● 監護機構假釋放者/精神治療拘留所執行終結者：保護觀察期間內（最多 3 年）
藥物治療命令	性犯罪者性衝動藥物治療法 Act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for Sex offenders	● 19 歲（含）以上性偏差者，性攻擊判決確定，被害人年齡在 16 歲以下	● 刑期終結後：最多 15 年 ● 監護機構假釋放者/精神治療拘留所執行終結者：保護觀察期間內（最多 3 年）

四、案件負荷量：

從保護觀察官員額數來看，韓國全國保護觀察官人數共 1,586 名（韓國人口總數近 5000 萬人），相較於我國觀護人人數共 221 名（臺灣人口總數約 2500 萬人），在換算人口密度後進行比較，韓國保護觀察官之數量密度，約為臺灣觀護人之 3.6 倍；亦即臺灣觀護人在總人口中之數量密度，約僅為韓國之 28%。

在案件負荷量方面，以韓國法務部所提供資料，2010 年保護觀察命令總計案件量為 221,811 件，以韓國全國保護觀察官人數共 1,586 名計算，平均每位保護觀察官案件負荷量約為 140 件；另根據 2014 年我國法務部統計資料，在社區矯治案件（含保護管束案件、社會勞動案件、緩起訴案件及附條件緩刑案件）數量上，平均每位觀護人案件負荷量約為 232 件。相較之下，我國觀護人之案件負荷量，約為韓國保護觀察官之 1.66 倍。有關韓國保護觀察命令種類與案件負荷量，如表 5.5 所示。

表 5.5　韓國保護觀察命令種類與案件負荷量

命令種類 年度	總計	保護 觀察	社會 服務	受講/ 治療	審前 轉向	John School	位置 追跡	罰金社 會服務	調查
1989	10,755	7,971	121	297					2,366
1990	28,302	20,356	2,224	1,477					4,245
1995	65,253	48,352	7,636	3,185	476				5,604
2000	167,052	90,381	42,761	9,390	4,324				20,196
2005	164,977	84,794	39,709	15,849	3,333	3,210			18,082
2006	166,173	83,498	35,886	13,783	3,749	13,455			15,802
2007	183,388	84,478	42,190	16,293	4,073	18,784			17,570
2008	204,395	88,055	47,654	22,083	5,014	21,802	205		19,582
2009	241,412	92,722	48,902	25,888	5,648	39,631	591	4,667	23,363
2010	**221,811**	94,459	42,469	24,306	6,751	15,576	714	11,958	25,578

此外，在少年案件與成年案件之比例上，以韓國法務部所提供資料，2010 年全國保護觀察命令案件數量，在少年為 71,105 件（佔 36.2%），在成年則為 125,128 件（佔 63.8%），從 2006 年至 2010 年之統計資料觀之，無論少年或成年案件，大致上均呈現成長之趨勢，而與成年犯相較，少年犯之成長比例增加幅度較大。有關韓國少年與成年保護觀察案件數量狀況，如圖 5.3 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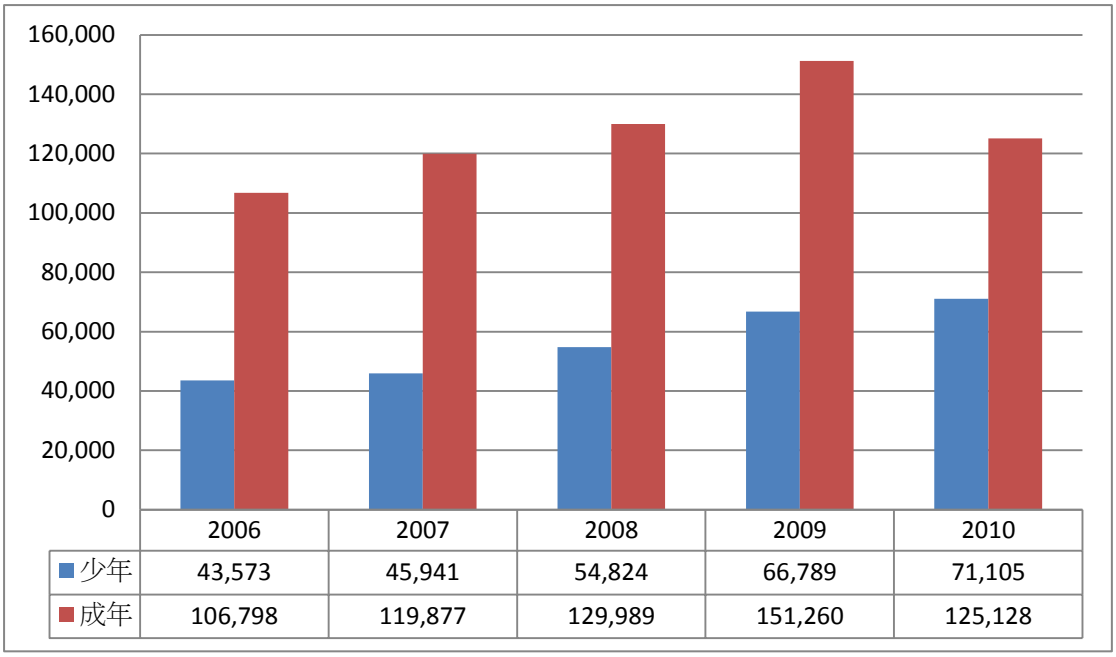

圖 5.3　韓國少年與成年保護觀察案件數量

陸、參訪紀實

本考察行程共參訪 6 單位，分別為：(一) 我國駐韓國台北代表部、(二) 韓國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三)首爾保護觀察所、(四)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五)國立法務醫院、及(六)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依序分述如下：

行程一：我國駐韓國代表部

本部考察團在參訪行程中特別安排拜會我國駐韓國代表部(Taipei Mission in Korea)，並由石定大使親自接待，石大使與代表團員暢談韓國與我國之互動情形，並從歷史脈絡至近期事件一一剖析，以深入淺出的方式協助團員掌握韓國之概況，令人印象深刻。本部考察團為感謝代表部此行協助接洽參訪事宜及提供行程安排諮詢建議等，由團長游明仁司長代表致贈本部紀念品，石定大使並與本部考察團員合影留念，雙方互動愉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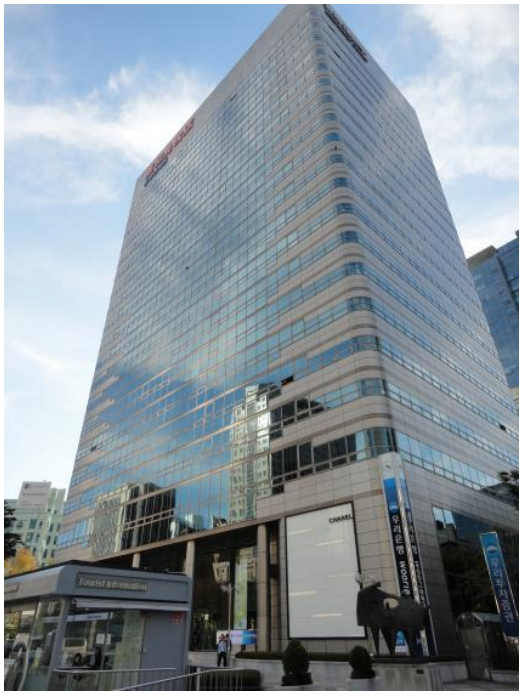

◎ 我國駐韓國代表部所在地辦公大樓

◎拜會石定大使

◎ 石定大使與本部考察團員合影

◎ 游明仁司長代表本部致贈紀念品

行程二：韓國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

一、機關介紹：

犯罪預防政策局（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直接隸屬於韓國法務部（Ministry of Justice），其成立宗旨係藉由預防再犯及協助判決確定者成功更生，來創造光明而健康的社會。在職掌上則包括有保護觀察（觀護）、位置追跡（電子監控）、少年偏差行為預防教育、法律教育及法律與秩序推廣活動等業務內容。

在組織編制上，相較於韓國矯正本部[9]，韓國犯罪預防政策局本部下設 5 個科，包括犯罪預防規劃科、法律暨秩序前瞻科、保護立法科、少年科及保護觀察科。所轄單位包括保護觀察所、少年院、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電子監控中心）、國立法務醫院（治療監護所）等 89 個機關，及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1 個特殊法人。在員工數目方面，截至訪問當日，犯罪預防政策局本部員工共 125 人，所屬機關職員共 2,600 人，現有職員數共計 2,725 人。

本部各科及其主要工作內容分別為：

[9] 韓國矯正本部隸屬於法務部，負責指揮及監督韓國的矯正機關。矯正本部下設有矯正政策團及保安政策團，共 7 個科。其中矯正政策團由綜合規劃科、職業訓練科、社會復歸科及福利科組成；保安政策團由保安科、調查分類科及健康照護科組成。所轄單位包括 4 個地方矯正廳及 52 個教導所及救治所（矯正機關）等共 56 個機關。地方矯正廳在其管轄範圍內直接監督當地矯正機關。在員工數目方面，截至訪問當日，矯正本部員工共 132 人，所屬機關員工共 15,292 人，現有職員數共計 15,424 人。

（一）犯罪預防規劃科（Crime Prevention Planning Division）

局內整體活動的規劃、以及人事、組織、預算的管理。

（二）法律暨秩序前瞻科（Law & Order Advancement Division）

法律與秩序推廣活動、以及發展法律教育方案及相關內容（如法律教育教材與網路線上遊戲等）。目標在透過簡單而有趣的方式，結合市民（包括少年）來創造快樂而安全的生活環境。

（三）保護立法科（Protection Legislation Division）

保護觀察、少年保護及監護等相關法律之發展及修訂、以及藥物治療、監護及保護等機構之督核。

（四）少年科（Juvenile Division）

少年保護政策之設計、以及少年保護機構之督核（如安置收容、教育及評估等）。目標在對於迷失的少年給予希望，透過在「少年偏差行為預防中心」（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10]提供另類的教育方案與課程設計，預防有犯罪高風險的少年進一步犯罪，並協助偏差少年不再犯下第二次錯誤，使少年擁有健康而光明的生活。

（五）保護觀察科（Probation & Parole Division）

保護觀察、社會服務命令、教育/治療命令、位置追跡（電子監控）命令、性犯罪人社區公告及更生保護等業務之規劃與推動。目標在透過對於有再犯高風險個案的嚴密監督，以及提供更好的第一線臨床及更生服務，來有效地治療及保護個案，來達到強化社會安全網及預防再犯之目的。同時擴大社會服務的範圍，深入農村與住宅區，確保政策方向有利於整體社會大眾。

[10] 「少年偏差行為預防中心」的服務對象為需高關懷的危機少年，如無法適應校園生活的學生或暫緩起訴的少年等，透過法院或檢察官之轉介，少年偏差行為預防中心藉由在社區提供另類教育、法律課程及學習區辨偏差行為的原因等方式，來預防危機少年進一步出現偏差行為。

圖　韓國法務部大門入口

有關韓國犯罪預防政策局及保護觀察所組織架構，如圖 6.1 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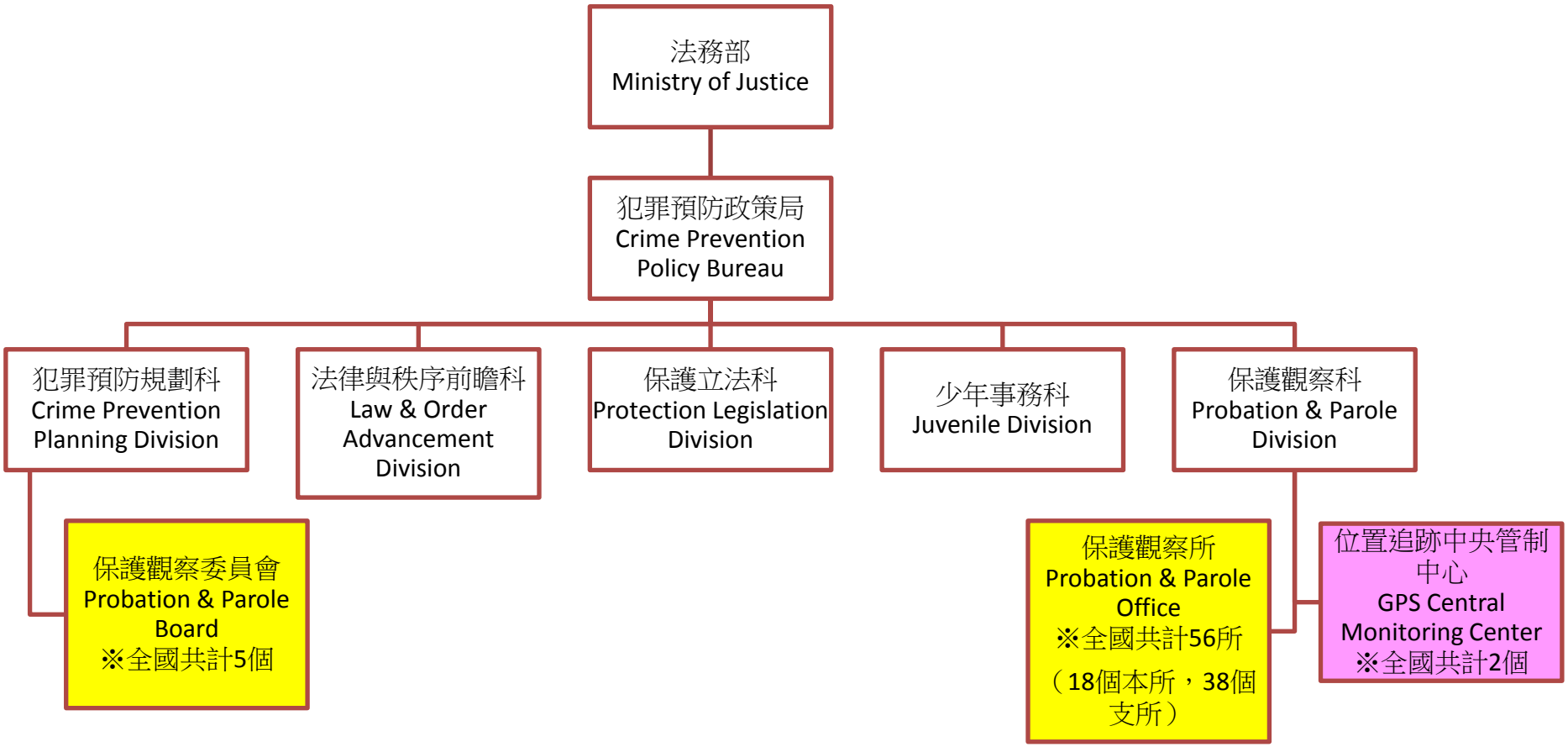

圖 6.1　韓國犯罪預防政策局及保護觀察所組織架構圖

二、業務概況：

考察團此行拜會韓國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主要接待單位為保護觀察科[11]，韓國保護觀察的發展歷史，在組織變革上，始自 1980 年 12 月 18 日新設立法務部保護局，1988 年保護觀察法（Probation Act）頒佈，2007 年 7 月 23 日將原組織名稱「觀察科」改編為「保護觀察科」。有關韓國保護觀察發展歷史，如表 6.1 所示。

1980.12.18　法務部保護局 新設立
1984.12.31　法務部保護局 審查科更名為觀察科
1988 年　　保護觀察法（Probation Act）頒佈
1989.07.01 觀察科 保護觀察本部 遂行（少年犯保護觀察制度開始實施）
1997 年　　成年犯保護觀察制度開始實施
2007.07.23 觀察科改編為保護觀察科

表 6.1　韓國保護觀察發展歷史[12]

年份	大事紀
1980	● 法務部保護局 新設立
1984	● 法務部保護局 審查科更名為觀察科
1988	● **保護觀察法（Probation Act）頒佈**
1989	● **少年犯保護觀察制度開始實施** ● 少年案件量刑前調查開始運作 ● 觀察科保護觀察本部及全國 22 個保護觀察所設置完成開始營運
1994	● 性犯罪人保護觀察開始實施
1995	● 保護觀察管理系統（MSPP）開始建構
1997	● **成年犯保護觀察制度開始實施**
1998	● 家庭暴力犯罪人保護觀察開始實施
2001	● 受保護觀察者搜尋做法的引進
2003	● 密集保護觀察監督制度開始實施

[11] 此相當於我國法務部保護司社區矯治科
[12]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2014） Korean Probation & Parole Services.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2004	●	性販運犯罪人保護觀察開始實施
2005	●	John-School 計畫開始實施
	●	宵禁監督開始使用聲音確認裝置
2007	●	觀察科改編為保護觀察科
2008	●	**位置追蹤（電子監控）方案開始實施（性犯罪人）**
	●	上訴前、審判前、量刑前調查制度開始運作（成年犯）
2009	●	罰金不履行者**易服社會服務制度開始實施**
2010	●	電子監控方案適用對象的擴大（殺人犯及兒童綁架犯）
2011	●	性犯罪人**藥物治療方案開始實施**

保護觀察科的主管業務，包括保護觀察、社會奉事、講習命令、電子監督、調查、性暴力犯罪者、社區公告制度、性衝動藥物治療等相關事項。目前保護觀察科所屬單位，全國共有 56 個保護觀察所（含 18 個本所及 38 個支所）、2 個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電子監控中心）及 5 個保護觀察審議委員會。此外，保護觀察科並負責監督與指揮出獄者的更生保護實施狀況，包括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及 7 個民間法人團體。

在員工數目方面，截至訪問當日，保護觀察科員工共計 39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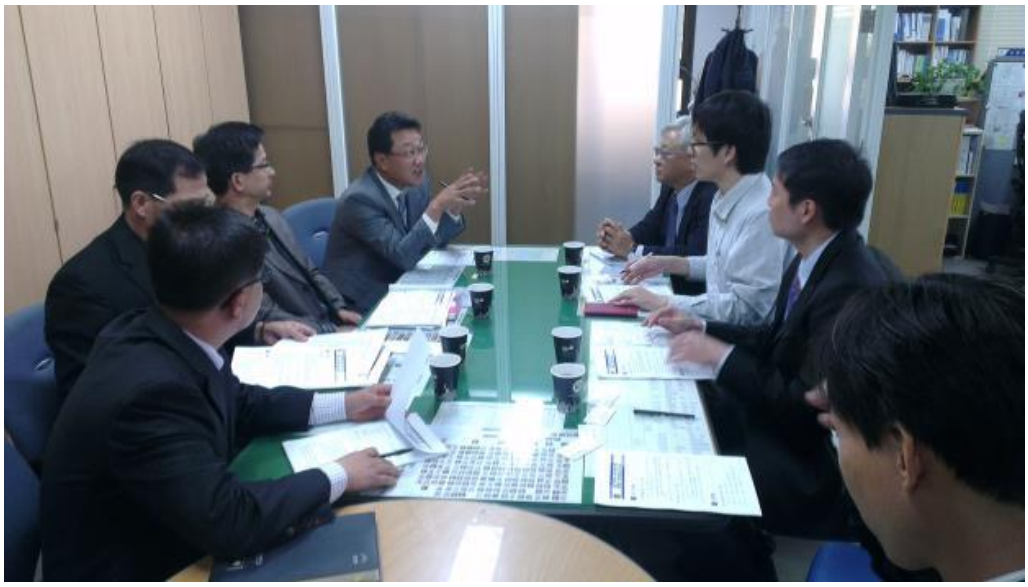

◎ 韓國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 保護觀察科科長 Sohn Yoi-Chull（孫外哲，左 4）率同其他科長與矯正本部社會回歸科代表，與本部考察團員舉行交流座談

◎ 韓國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局長 Hwang Cheol-Kyu（黃哲圭）向本部游司長介紹該單位文宣與司法保護制度，期待未來能有更進一步合作交流之機會，雙方並交換紀念品，合影留念。

行程三　首爾保護觀察所

韓國目前全國共有 56 個保護觀察所（含 18 個本所及 38 個支所）、2 個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電子監控中心）及 5 個保護觀察審議委員會（Probation & Parole Board）。保護觀察業務鄰接單位包括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及 7 個民間法人團體，負責出獄者的更生保護實施狀況，皆受韓國犯罪預防政策局監督與指揮。

一、機關介紹

首爾市共有 25 個行政區，其中 9 個區設有保護觀察所本所，其中首爾保護觀察所為 9 個本所其中之一，首爾保護觀察所並設有 5 個支所。

首爾保護觀察所的組織下轄行政支援課、觀察課、特定犯罪者管理課、執行課、調查課等單位，管轄地區包含了首爾特別市在內等 5 個地區，目前首爾保護觀察所管理區域在首爾市的部份為為東大門區及鍾路區等 9 個區域。關於首爾保護觀察所組織架構，如圖 6.2 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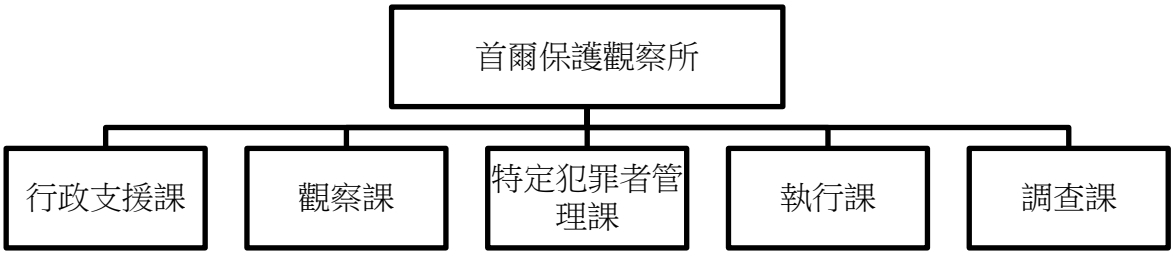

圖 6.2　首爾保護觀察所組織架構

在員工數目方面，截至訪問當日，首爾保護觀察所（Seoul Probation & Parole Office）員工（主要為保護觀察官）共 88 人，保護觀察審議委員會 9 人，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 30 人，現有員工數共計 127 人。

◎ 首爾保護觀察所

◎ 首爾市地鐵站出口，即有首爾保護觀察所的方向標示

◎ 首爾保護觀察所所長 Kim Young-hong（金英洪）率同各課課長與本部考察團員舉行交流座談

◎ 首爾保護觀察所所長 Kim Young-hong（金英洪）與本部考察團員合影

二、業務概況：

本節分就首爾保護觀察所在保護觀察、位置追蹤、社會服務、受講命令及調查等業務之執行概況，依序進行簡要說明。

（一）保護觀察

根據 2014 年 9 月統計資料，首爾保護觀察所目前受保護觀察案件共有 2,439 件，其中有 1,655 件是成人案件（佔 67.9%），784 件是少年案件（佔 32.1%）。有關首爾保護觀察所保護觀察案件量，如圖 6.3 所示。

在保護觀察案件量方面，在 2014 年 9 月當月，全韓國保護觀察案件量計 48,646 件。與去年同期（2013 年 9 月）相較，全韓國降低約 0.1%，而首爾保護觀察所則成長約 9.5%。有關近 1 年全韓國及首爾市保護觀察案件量增減情形，如圖 6.4 及 6.5 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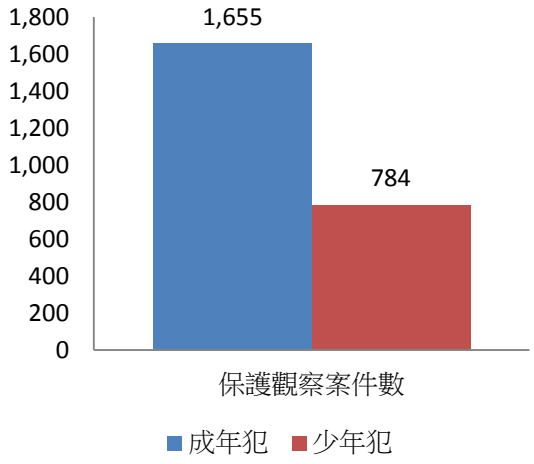

圖 6.3　首爾保護觀察所保護觀察案件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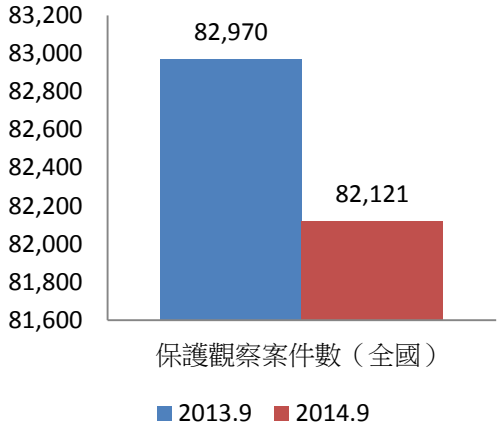

圖 6.4　近 1 年全韓國保護觀察案件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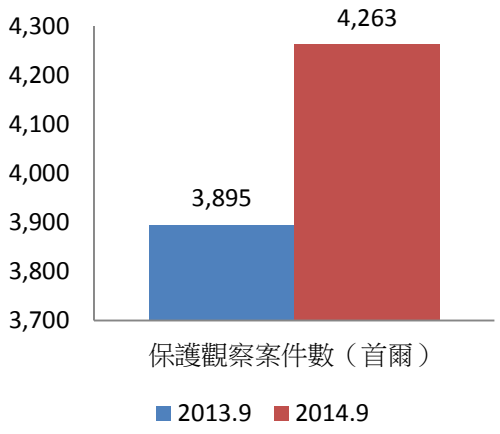

圖 6.5　近 1 年首爾保護觀察案件量 增

減情形　　增減情形

（二）位置追蹤

根據 2014 年 9 月統計資料，在 2014 年 9 月當月，首爾保護觀察所目前電子監督對象共 112 人，其中包括罪名有殺人 13 名，性暴力 58 名，盜匪 3 名及其他 38 名，為了要強化電子腳鐐的監督機制，目前實施「24 小時警報處理專任班」制度。

（三）社會服務

根據 2014 年 9 月統計資料，首爾保護觀察所共有 29 個社會服務機構（如首爾老人福祉中心等），2014 年 1 月至 9 月共執行 17,042 人。

在社會服務案件量方面，在 2014 年 9 月當月，全韓國社會服務案件量計受理 32,083 人，其中 25,314 人已經執行完成，首爾保護觀察所共受理了 1,589 人，其中 1,276 人已經執行完畢。與去年同期（2013 年 9 月）相較，全韓國增加了約 1.9%，首爾保護觀察所則降低約 5.1%。有關近 1 年全韓國及首爾市社會服務案件量增減情形，如圖 6.6 及 6.7 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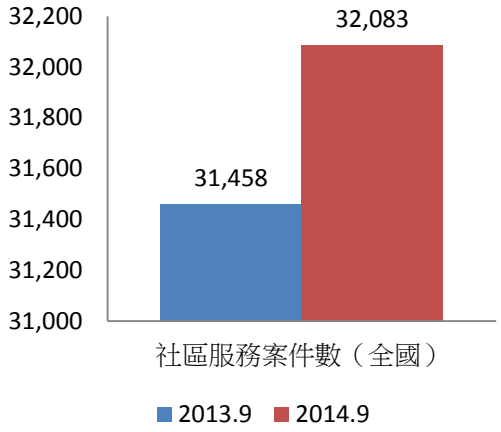

圖 6.6　近 1 年全韓國社會服務案件量增減情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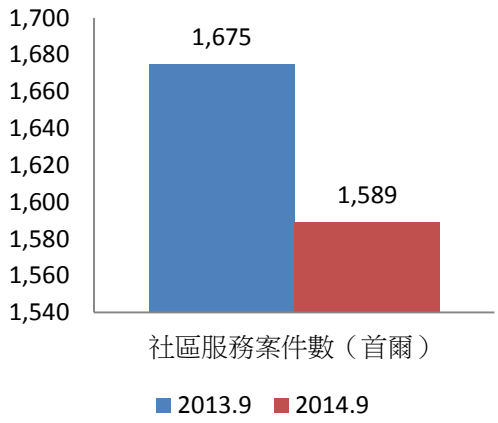

圖 6.7　近 1 年首爾社會服務案件量增減情形

其中在農村地區事業支援服務方面，目前（2014 年 1 月至 9 月）共執行 3,240 人，至年底的目標人數為執行 4,430 人。社會服務案件的農村支援服務開始於 2010 年 4 月 1 日，由韓國法務部與農協中央會簽屬協定，現在農村地區因為勞

動力不足的關係，此制度對於農村被認為相當具有助益。

在中低階層（及特殊族群）支援服務方面，目前（2014 年 1 月至 9 月）執行中有洗衣房服務及清掃志工人員為 1,126 人、食物銀行為 639 人、住居環境環境改善活動為 262 人。

此外，社會服務有所謂「社會服務國民共募制」，主要是指當地方居民、團體、機關提出需要志工協助之需求時，保護觀察所就會透過審查機制提供志工服務，在 2014 年，此類社會服務共執行了市民農園等 46 件，計 512 人次，並為了要讓實施對象減少生活上的不便，彈性執行了 918 人次，周末 118 人次，罰金未納者勞動服務則共受理了 420 件，其中 322 件已執行完畢。

此外，在社會服務執行根據、執行機構案件數量及主要活動內容方面，分別整理如下：

1. 社會服務執行根據[13]

表 6.2　韓國社會服務執行法律依據

法律根據	命令時間	執行根據
刑法	500 小時內	保護觀察等相關法律、罰金未繳納者社會服務執行相關特例法
少年法	200 小時內	
未繳罰金者社會服務執行相關特例法	480 小時內	
家庭暴力犯罪的處罰等相關特例法	200 小時內	
性買賣介紹等行為的處罰相關法律	100 小時內	
兒童虐待犯罪的處罰等相關特例法	200 小時內	

2. 社會服務「執行機構案件數量」與「評價方式」

I. 社會服務執行相關機構：首爾地區 116 個，全國 1,170 個

II. 每年全國約執行 4~5 萬件社會服務

表 6.3　近 3 年韓國社會服務執行案件量

年度	2011	2012	2013
事件	47,658 件	45,842 件	46,179 件

III. 評價方式：根據「保護觀察所機關評價方針」，每年對全國機構的社會服務執行內容實施評價

3. **社會服務執行主要活動內容**

I. 社會服務農村支援

[13] 請參附錄二（韓國「保護觀察等相關法律」中有關「社會服務」之相關法律）

a. 2010. 4 與農協中央會締結「社會服務者農村支援」業務，目前全國實施中，針對高齡者實施協助農事、週邊環境改善、緊急救難避難等。
b. 雖然面臨高齡化、人手不足、農事材料價格上漲等困難，不過全國農村地區皆提供實際幫助。
c. 經濟的支援效果:5 年約 306 億韓幣 = 460,950 人 x 66,431 韓幣(2010 年，韓國農村經濟研究院調查）

II. 社會服務國民共募制

a. 在收到需要幫助的一般國民申請之後，經過相關保護觀察所審查，即針對申請項目派遣人力給與支援（2013.5 起實施）
b. 試圖導入在執行社會服務時讓國民也能參與的方案，轉換成以需求者為主軸的政策走向

既有方式（AS-IS）	社會服務國民共募制（TO-BE）
▪ 國民不可能申請與參與 ▪ 由官員主導的一般型執行 ▪ 受惠對象有限 ▪ 以供給者為主的法執行	▪ 任何國民皆能申請與參與 ▪ 以受惠者為主的互動型執行 ▪ 對各受惠者提供量身服務 ▪ 以需求者為主的國民親近法執行

圖 6.8　韓國社會服務的政策走向

III. 社會服務執行流程

法院判決決定→申告→擬定執行計畫→社會服務開始教育→執行→結束

4. **各地、各類之「社會服務」實際執行情況**[14]

(1) 「地區社會支援」 ：可為地方社會提供各種支援，例如清除非法壁報與塗鴉、地方環境淨化活動等

◎ （鞍山）始華湖環境淨化活動

◎ （濟州）海邊清除海藻作業

◎ （首爾） 繪製壁畫

◎ （論山）清除人行道雜草與淨化活動

[14] 參照首爾保護觀察所提供法務部製做之社會服務書面介紹資料

(2) 「支援弱勢階層」：幫助老人、殘障人士、少年少女家長、多文化家庭、低所得階層等易受冷落的族群

◎（光州） 打掃殘障人士居所

◎ （城南） 獨居老人移動沐浴服務

◎ （釜山東部） 協助年長者剪髮

◎ （濟州） 協助重症殘障人士觀光

(3) 「支援改善周邊環境」：裝修房屋、油漆、地板紙、防蟲網更新、打掃等支援改善愉快的居住環境

◎ （高陽） 建築敬老堂圍牆

◎ （井邑市） 協助獨居老人更換地板紙

(4) 「農村等支援」：對因缺乏工作人力而歷經困難的農、漁村地區推動各種支援活動

◎ （群山） 插秧與搬運苗圃

◎ （慶州） 清除韭菜田雜草

(5) 「緊急災難修復支援」：颱風、暴雨、暴雪等導致災難發生時，針對受災地區實施緊急修復支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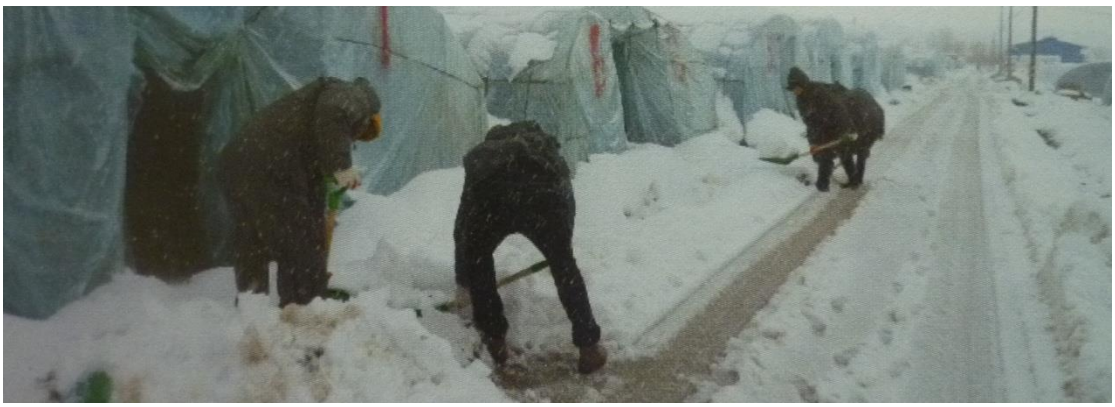

◎ （浦項） 暴雪地區清掃積雪作業

◎ （西山） 強風導致落果之回收作業

(6) 「福利社施支援」針對福祉館、殘障人士工作場所、老人療養設施等實施支援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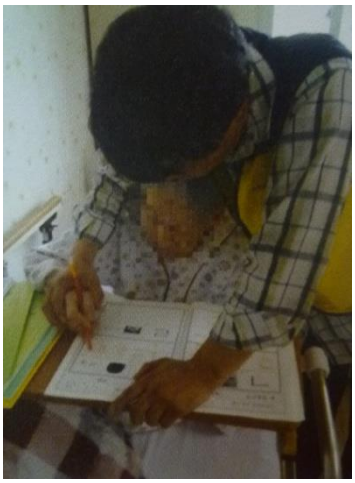

◎ （鞍山） 失智老人情緒支援

◎ （鞍山）福利社施整修活動

◎　（釜山東部） 殘障人士工作場所洗衣物搬運等

◎　（大邱） 銀髮城鎮泡菜醃製

(7) 「其它公益支援」：可協助公益性質的活動、慶祝活動、競賽大會等，以及公益團體活動支援等

◎　（束草市）支援殘障人士不倒翁馬拉松大會

◎　（天安） 支援籌措兒童基金義賣

◎　（浦項） 支援年長者孝道園地餐會

（四）受講命令

首爾保護觀察所受講命令(講習業務)教育課程共區分為二大類 10 種課程，其中一類為特殊案件教育課程，包括家庭暴力、性暴力、酒精戒癮及藥物濫用等 6 種主題課程；另一類為其他，共 4 種教育課程。目前有酒駕講習及 John School 等課程正在運作當中。

在受講命令案件量方面，在 2014 年 9 月當月，全韓國受講命令案件量計受理 22,867 人，其中 16,574 人已經執行完成，首爾保護觀察所共受理了 1,227 人，其中 891 人已經執行完畢。與去年同期(2013 年 9 月)相較，全國成長約 7.9%，首爾保護觀察所亦成長約 48.9%。有關近 1 年全韓國及首爾市受講命令案件量增減情形，如圖 6.9 及 6.10 所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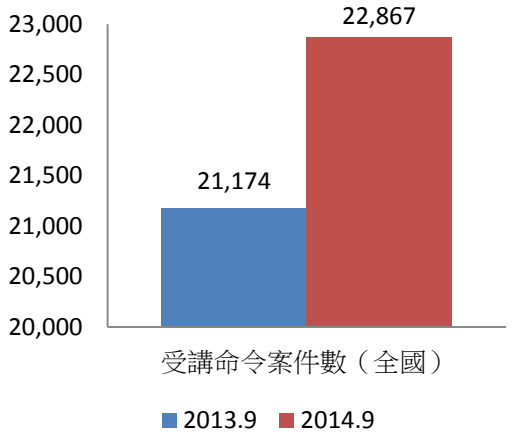

圖 6.9　近 1 年全韓國受講命令案件量增減情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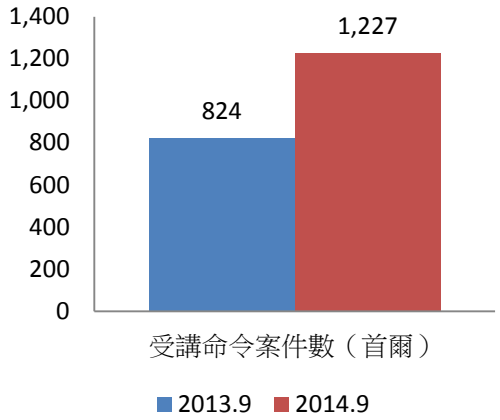

圖 6.10　近 1 年首爾受講命令案件量增減情形

首爾保護觀察所在 2013 年 4 月 1 日成立講習執行中心，執行方式為每周 1 至 2 次，每次進行約 6 至 7 個小時，周進行者與輔助進行者則是分組進行，如果整體來看 2014 年執行成績的話，性暴力課程計 28 個共 4,653 人，家庭暴力課程計 13 個共 1,239 人，藥物戒癮課程計 12 個共 796 人，酒精戒癮課程計 5 個共 345 人。以上課程每個均含有 7 回教育課程。

（五）調查

在調查案件量方面，在 2014 年 9 月當月，全韓國調查案件量計 18278 件，首爾保護觀察所共 953 件。與去年同期（2013 年 9 月）相較，全國成長約 3.3%，首爾保護觀察所亦成長約 4.4%。有關近 1 年全韓國及首爾市調查案件量增減情形，如圖 6.11 及 6.12 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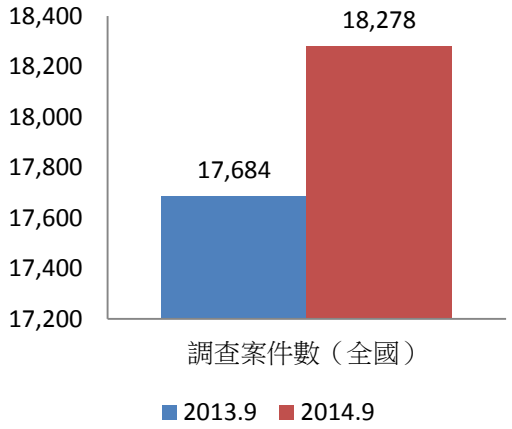

圖 6.11　近 1 年全韓國調查案件量增減情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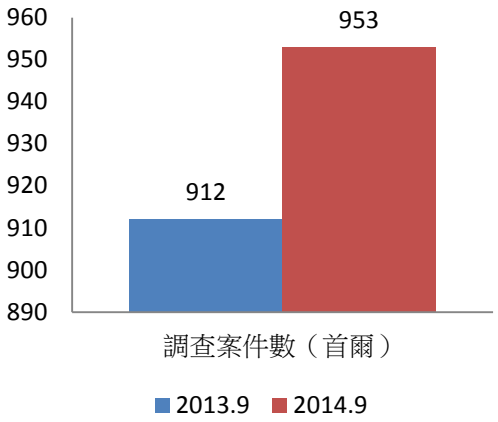

圖 6.12　近 1 年首爾調查案件量增減情形

韓國全國調查案件種類及數量，依據 2014 年 9 月統計資料，法院量刑前調查（Pre-Sentence）為 1,781 人、法院裁決前調查（Pre-Ruling）為 9,515 人、檢察官起訴/上訴前調查（Pre-Petition）為 2,124 人、檢察官決策前調查（Pre-Decision）為 512 人，合計 18,278 人。

首爾保護觀察所調查案件種類及數量，依據 2014 年 9 月統計資料，法院量刑前調查為 52 人、法院裁決前調查為 586 人、檢察官起訴/上訴前調查為 189 人、檢察官決策前調查為 126 人，合計 953 人。如圖 6.13 及 6.14 所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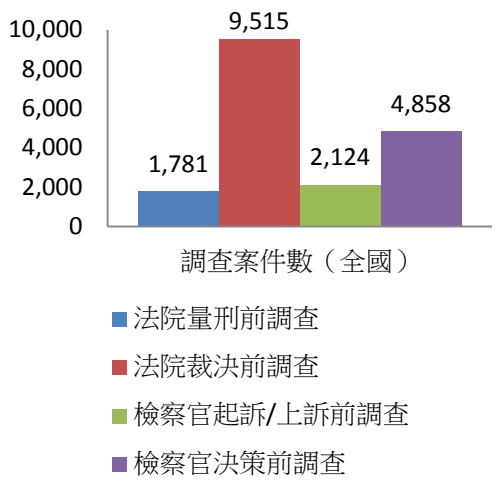

圖 6.13　近 1 年全韓國調查案件量增減情形（以種類區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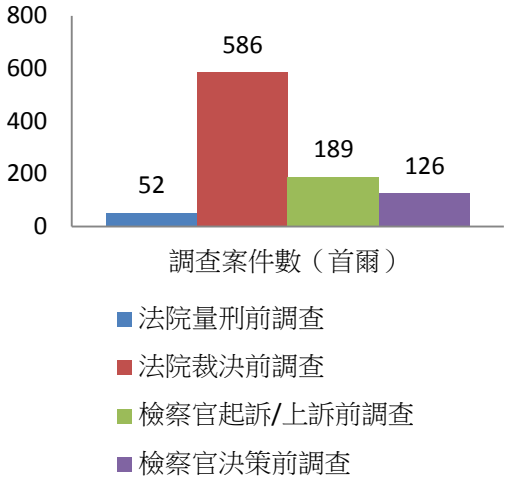

圖 6.14　近 1 年首爾調查案件量增減情形（以種類區分）

◎ 首爾保護觀察所行政課長解說韓國保護觀察發展歷史與大事紀，並解說標誌所代表意義與吉祥物娃娃（首爾保護觀察所 保護觀察文物紀念館）

行程四：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

一、機關介紹[15]：

位置追跡管制中心為法務部犯罪防制機構，2008 年 9 月於首爾設立中央管制中心，因管理對象增加，於 2011 年 12 月設置大田管制中心。中央管制中心職員有 29 名，其中直接擔任位置追跡對象者管制職務之職員有 20 名，分為四個早晚班交接勤務，擔任系統和電子腳鐐技術者和一般行政職員等構成。事業費、人事費等均是國家預算。有關韓國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的轄區分配，如圖 6.15 所示。

中央管制中心

大田管制中心

圖 6.15　韓國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的轄區分配

[15] 資料來源：2014 年 10 月 29 日韓國犯罪政策預防局簡報。

中央管制中心為地上三層，地下一層之建築物，總面積約 993 平方公尺。第一層為展示區及體驗區，開放民眾參訪，並體驗配戴電子裝置進入禁制區之模擬情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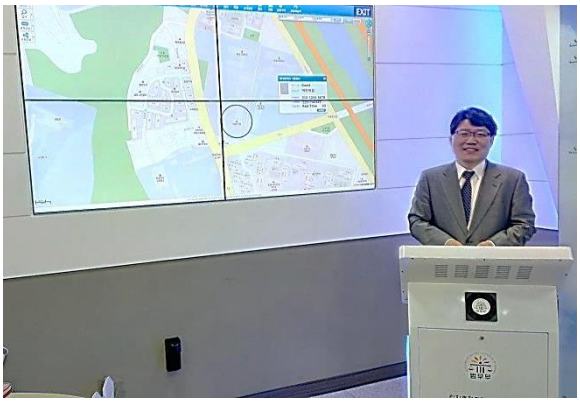

◎左：禁制區模擬與配戴體驗、右上：軌跡圖顯示、右下：進入禁制區體驗

◎左上：展示區全貌、左下：第一代至第四代電子腳鐐、右：展示區看板

二、業務概況：

（一）管制中心相關法令[16]：

依據特殊犯罪電子裝置安裝法第 5 條，各種特殊犯罪特別請求執行電子裝置安裝要件為：檢察官請求及法官宣告，危險性是重要的量刑因子，檢察官及法官依據保護觀察所「申請前調查」之參考資料判斷再犯危險性。相關法令如下：

(一) 特殊犯罪者關於保護觀察及電子裝置安裝等相關法律[17]：規定電子監督受監控者之程序及電子腳鐐安裝規定。

(二) 特殊犯罪者關於保護觀察及電子裝置安裝等相關法律施行令[18]：規定受監控者位置確認及移動路徑探測，從設備電信微波接收資料之保存、使用、廢棄業務。位置追跡管制中心安裝、營運程度之規定。

特殊犯罪等對象（包括暴力犯罪、未成年誘拐犯罪、殺人犯罪及強盜犯罪 ），分為 1.刑執行結束後階段 2.緩刑階段 3.假釋犯、假釋終了、假釋出所階段。監控命令刑事司法應用階段及賦予命令之主體分述如下：

(一) 刑執行結束及緩刑階段，賦予命令主體為法院。

(二) 假釋階段，為保護觀察審查委員會。

(三) 假釋終了、假釋出所階段，為治療監護審議委員會。

對性暴力犯罪者申請前調查之再犯危險性評估係用韓國性犯罪者危險性評估量尺（K-SORAS ）、精神病質遴選工具（PCL-R ）、多面向人格檢查（MMPI ）、酒精使用遴選檢查。

有關監督對象之類型及罪名統計，如下表：

表 6.4　位置追跡監督對象統計表

合計	假釋犯	假釋終了、假釋出所	緩刑	刑期終了
2027（100%）	290（14%）	78（4%）	73（4%）	1586（78%）

表 6.5　位置追跡監督對象罪名統計表

合計	性暴力	殺人	誘拐	強盜
2027（100%）	1681（83%）	264（13%）	2（0.1%）	80（4%）

[16]資料來源：2014 年 10 月 29 日韓國犯罪政策預防局簡報。

[17]詳附錄一：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8]詳附錄二：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二）電子管制之實施[19]：

電子裝置監控期間係為法院判決書、保護觀察審查委員會、治療監護審議委員會裁定決定。徒刑終了者最長監控 30 年，假釋犯之假釋期間、假釋終了、假釋出所者為 3 年以內，緩刑者為 1-5 年之間。依照受監控者犯罪時間、犯罪手法等會被賦予特別義務遵守事項，夜間禁止外出（通常為凌晨零時至上午六時），托兒所或被害者禁止接近命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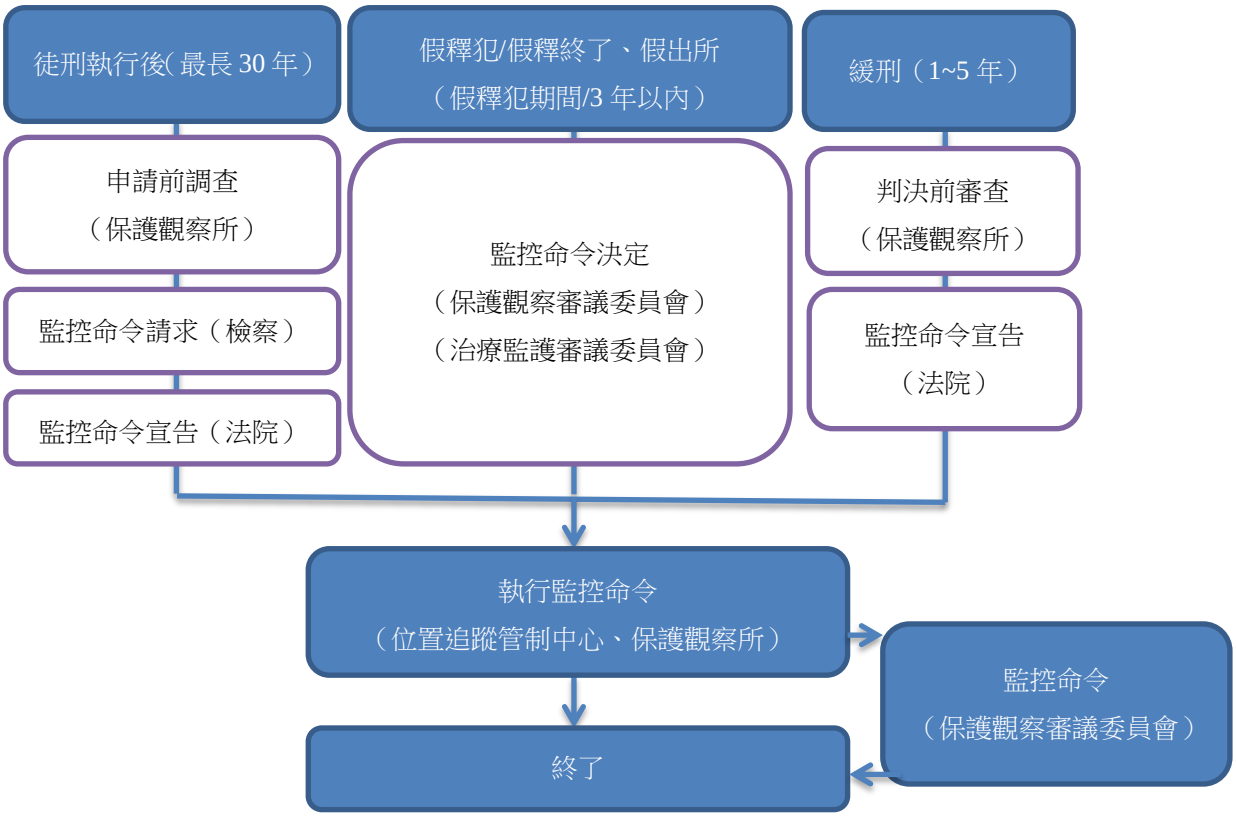

圖 6.16　電子管制之實施流程

受監控者的義務（參考： 特殊犯罪者關於保護觀察及電子裝置安裝等相關法律第 14 條、同法施行法第 11 條、第 12 條）包括以下幾項：

(一) 受監控者電子裝置監控期間中電子裝置與身體任意分離、設備損傷、通信傳播妨害或者訊號接收資料變造，除此之外也不能有傷害設備效能等。

(二) 維持電子裝置機能正常，電子裝置充電、攜帶或者管理。

(三) 電子裝置不能正常運作時，立即將事實陳報保護觀察官。

(四) 電子裝置功能維持以回應保護觀察官之指示。

(五) 受監控者為特別犯罪者刑執行終了或免除假釋 10 日內於居住地觀察，並由

[19]資料來源：韓國位置追蹤裝置電子監督簡介。

保護觀察所申報報到書面資料。

(六)受監控者居住地移轉或 7 日以上國內旅行，或出國須先受到保護觀察官許可。

(七)受監控者電子裝置為國家預算負擔，但確認受監控者故意毀損，費用由受監控者自行負擔。

（三）管制中心職責及執行程序[20]：

管制中心透過位置追跡衛星裝置確認受監控者之位置及移動路徑。管制中心接獲受監控者違反應遵守事項之警報，對應其監控命令對受監控者給予電話聯繫，受監控者需要面談和現場確認的情況，由保護觀察所聯絡受監控者已取得相關資料。

由專職保護觀察官執行監控命令之電子腳鐐安裝、手機式追蹤裝置交付及在家監督裝置安裝，於受監控者釋放後立即到居住地設置。當位置裝置系統出現危險警報和注意警報。管制中心人員由系統中看到警報，立即經由與受監控者或關係人電話連絡判斷警報真偽後，將警報內容移轉給專職保護觀察所，必要時請警方出動處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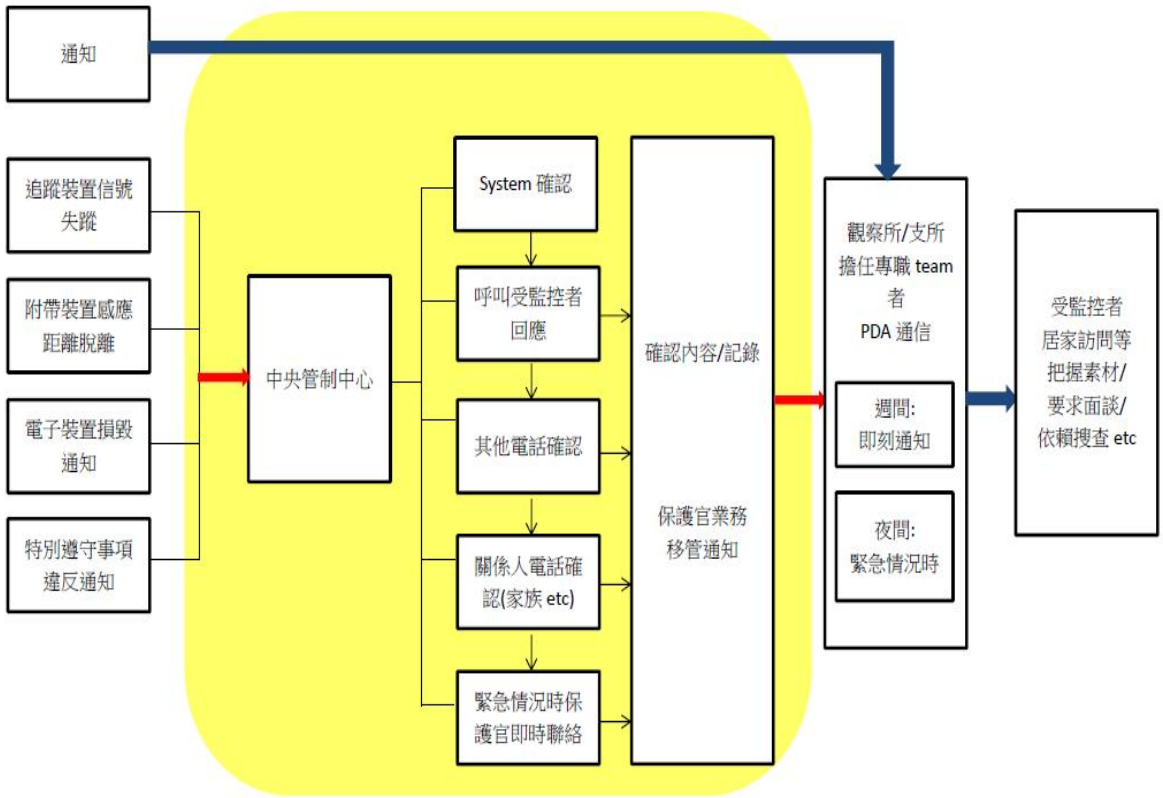

圖 6.17　管制中心執行程序

[20]資料來源：2014 年 10 月 29 日韓國犯罪政策預防局簡報。

◎ 訊號傳送圖

◎ 保護觀察官接收訊息之手機裝置

管制中心工作項目包括：

(一) 位置追蹤管制系統之營運及位置追蹤電子裝置（電子腳鐐）管理。

(二) 受監控者位置確認、移動路徑探知及警報處理。

(三) 訊號接收資料之保存、使用、廢棄管理事項。

(四) 電子裝置之購入、位置追蹤系統維護等契約訂定。

(五) 警報發生處理、移轉保護觀察所等，就各種統計資料收集、分析。

受監控者之指導監督包括初期之面談、分類、談話治療等執行，及誠實履行義務遵守事項，違反命令將會採制裁措施。受監控者義務遵守事項違反時，會被拘留、留置，緩刑、假釋犯、假釋終了等原處分取消，或監控期間延長、追加變更義務遵守事項之制裁措施。

◎保護觀察官至受監控者家安裝設備並說明遵守事項

（四）電子追跡設施種類、使用技術、資本和限制[21]：

韓國位置追跡電子裝置之種類：

(一) 手機式追蹤裝置：3G 移動通信、GPS、WiFi 信號接收，具備即時聲音通話功能，可測量受監控者腳鐐狀態，並以此裝置獲得並傳輸受監控者位置。

(二) 腳鐐：腳鐐表面毀損感知、錶帶毀損感知、完全防水功能，受監控者之電子身分證，發送信號給手機式追蹤裝置。

(三) 在宅監督裝置：回家及在家確認、位置移動感知、裝置毀損感知等功能，以手機式追蹤裝置與此設備結合，取得受監控者回家、外出之信號。

圖 6.18　韓國位置追跡電子裝置（左：手機式追蹤裝置及在宅監督裝置、右：腳鐐）

位置追蹤技術採用 GPS、WiFi、Beacon[22]、P-cell、Cell 方式，以多樣性技術為確保各種環境（如室內、室外、地下、地下鐵等）電子資訊之連續性。電子裝

[21]資料來源：2014 年 10 月 29 日韓國犯罪政策預防局簡報。
[22]係為一種發射無線定位訊號的裝置。

置間的通信為了減少電力使用，使用 RF 通信方式。電子裝置和管制中心之通信使用移動通信網，可接受全國（移動電話通話可能地點）真實電子資訊常態情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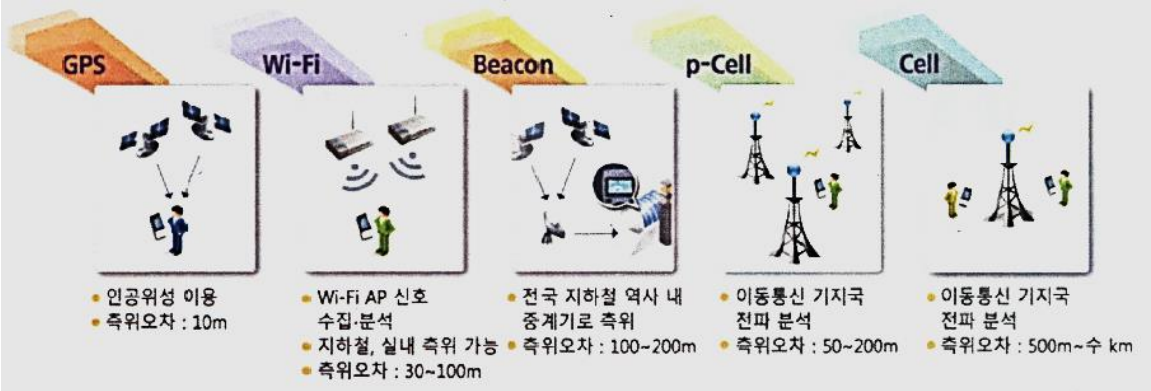

圖 6.19　韓國位置追蹤技術種類

位置追蹤電子裝置和位置追蹤系統開發費用初期約 80 億韓元，也為技術變化、營運效率、用量增加而追加相關開發事業。目前已經為第四代電子裝置，可使用無線方式充電，亦可以使用車充。

圖 6.20　位置追跡電子裝置採無線充電方式充電

（五）位置追蹤中央管制中心和保護觀察所、法務部之間的分工關係[23]：

法務部為擔任政策規劃、計畫立案、評價、宣傳等業務之中央行政機關，管制中心及保護觀察接受其指揮監督，為所屬機關；位置追蹤中央管制中心目的在確認受監控者位置、探知其移動路徑等，對受監控者違反規則發生警報的情況給予電話聯絡；保護觀察所接受位置追蹤中央管制中心管制人員移轉之警報，至受監控者居住地登門拜訪、現場確認。追跡管制中心和保護觀察所職務制度上為獨

[23]資料來源：2014 年 10 月 29 日韓國犯罪政策預防局簡報。

立機關，全員均屬法務部公務員。

（六）意見交流

與中央管制中心所長及科長對監控業務交流意見，僅將雙方談話內容分類摘述如下：

(一) 電子追蹤裝置實施由來

韓國電子追蹤裝置成立係因性暴力犯罪非常多，韓國政府為了作出對策而成立，提倡者是現任韓國總統朴槿惠，在 2005 年 4 月 8 號的國政演說（當時是執政黨國會議員 ）透過電子腳鐐和電子追蹤這些裝置來徹底根除韓國的性暴力犯罪。剛開始提出的想法是戴在手腕上面或是裝 IC 晶片到手腕裡面，可是發現戴在手腕上會造成當事者不方便，而裝晶片則有人權的問題，所以到後來全部改成電子腳鐐。

法律是在 2007 年 4 月制定，原因是在 2006 發生小學生性暴力事件並遭殺害，在 2008 發生小學生綁架事件，所以在 2008 年有修訂法案，
原來實行的時間是 5 年，後來改成 10 年，期間又發生一些重大的刑事案件，因此實施的對象和時間又再擴大，其中加入誘拐、殺人、強盜，到了 2014 年強盜的監督系統正式實行。

目前電子監督設備在全世界有 22 國投入，分為兩個世代，第一個世代是在家拘禁，由特定人員管理，主要國家有加拿大、挪威、奧地利，第二個世代是電子位置追蹤機制，從第一世代到第二世代，國家通常具備良好的通訊技術和電腦發展技術，韓國跳過第一世代，直接執行第二世代，跳過的原因有兩個，第一個，當時國民對性暴力犯罪感到十分憂慮，政府想盡快做出改善，第二個，韓國的電子通訊技術已經相當發達，因此有能力直接做第二代。

(二) 電子追蹤裝置硬體設計

1. 移動晶片傳到機器，機器再傳到衛星，技術等級比手機還高。
2. 外出攜帶兩個裝置，一個戴腳上，一個戴身上。在美國有些州有一件式，在韓國戴兩件式的原因是手機可以直接跟在法務部的中心通話，手機還有很多功能，例如中心的管理人員可以透過遠距離控制。雖然一件式的設備可以防止隨意丟棄，但一件式的體積更大造成攜帶不方便，另外，電池充電後約可使用 40 天，若使用一件式，電池體積也更大，會造成傷害也較容易露出設備。
3. 腳鐐可能會遭強行破壞，破壞後警方就會接到通知。腳鐐錶帶裡面是鋼絲，內有一個防剪的 sensor，遭破壞會立即通知。
4. 腳鐐充電設計包括車輛型和移動型。

5. 腳鐐有防水功能，洗澡的時候也可以帶著。
6. 手機式裝置只能跟管制中心通話，若對象故意不使用手機，中心可以直接遠端開機和對話，也可直接監聽。
7. 手機式裝置和電子腳鐐如果離開一定的距離，腳鐐會震動通知當事者的手機，避免當事者故意丟棄手機，透過手機機器跟基地台和衛星連絡，再經由韓國國內移動通信網傳到位置追跡中心，若有狀況則由保護觀察所會派出保護觀察官或警察去處理。

(三) 電子追蹤裝置定位方法交流

1. 位置的追蹤主要的方式為 GPS，但有些建築物或地下室有死角，所以還有採用 WiFi 追蹤，能更仔細追蹤犯罪者的位置。WiFi 技術和通信公司基地台沒有區分，通信公司也會提供 WiFi，透過 WiFi 的 AP 去測定當事者跟基地台的距離，猜測人的位置。測量韓國大多數的 WiFi 基地台，若一邊 WiFi 強，一邊 WiFi 弱，則會去測 WiFi 強跟弱的 AP 位置大概的真實位置去追蹤。
2. 韓國地下鐵的定位技術是用 baken 的技術去追蹤，但是 wifi 跟 baken 的方式還是會有遺漏，還會再透過通信公司的基地台去做更仔細的追蹤。
3. 配戴電子腳鐐的人有以下遵守事：第一、盡量避免跟被害者過於接近，第二、不可接近中小學附近，第三、不可接近女子學校。
4. 針對如何監測犯罪者是否跟被害者過於接近，韓國主要以居住的地方避免雙方過於接近，電子腳鐐的位置跟被害者家的位置距離若少於一百公尺，則會進行管制。目前沒有提供被害者裝置，因有實際使用上的難度，還有法律訴訟的問題。
5. 可以透過裝置去追蹤犯罪者移動的距離、方式、幅度，也可以找出犯罪者特定時間移動的通路。移動的狀態四十秒記錄一次。
6. 當收不到基地台訊號的時候，就無法回傳給中心，紀錄會有一段是空白，這樣的問題是如何處理方式，韓國目前未發生通訊不良造成紀錄空白的狀況，因通訊不良時會繼續做紀錄，一旦抓到訊號便會一次傳到追跡中心。
7. 通信無效管制中心會知道，並依前後的移動方式來做判斷，如果行為已經異常則會追蹤，如果整體上是沒有問題的，則不會有所動作。

(四) 電子監控之執行

1. 設備的安裝是由保護觀察官執行。於安裝前，會進行事前教育，也會進行集體職前教育，因這個機關一直在運作，這些保護觀察官對機器的知識跟常識是有的，也有一批人是專門對設備和技術進行管理。
2. 119 名的職員是 24 小時監控並日夜交班。
3. 119 名職員全部都是法務部公務員。

4. 台灣特定時段不讓個案外出，韓國亦有類似的措施。會將限制的時段輸入腳鐐跟機器，如果在該時段對象離機器太遠的話，就會判定對象外出。限制的範圍約十公尺左右。
5. 執行監控的期間如果檢察官覺得犯罪者可能需要做電子監控，便會請保護觀察官做調查，如果保護觀察官也認為需要，便會呈報回檢察官，檢察官再向法官申請，最後依犯罪者的狀況做細部的規定，例如不能靠近被害人，不能靠近小學，不能靠近女子學校…等。
6. 一般個案監控期間平均大概七年，判刑時訂定監控時間，例如入獄兩年，戴電子腳鐐 7 年，或是判假釋後需要戴電子腳鐐的時間。
7. 因大部分的犯罪者無法負擔電子監控設備的費用，在韓國基本上是由國家負擔，如果有毀損則由犯罪者自行負擔。
8. 沒有在被告判決前就實行電子監控的案例，一定要要有法律的判決才會執行。
9. 設備不太會損壞，廠商是三星，品質上沒有問題。
10. 假釋犯如果違規則假釋可能會被取消，若攜帶期間破壞設備的話，除了原本的服刑時間和配戴電子腳鐐的時間外，依情節大小重新訂定攜帶電子腳鐐的期間，約七年以下，並賠償設備的損壞。
11. 如果個案有小違規，沒有明確的規定，看情況決定。

(五) 電子監控之推廣

1. 機關隸屬於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是由保護觀察官負責跟犯罪者接觸和安裝設備，保護觀察官隸屬於保護觀察所，有 56 個保護觀察所，2008 年的使用者約 151 名，到 2014 年的使用者約 2067 名，成長了 13 倍左右，負責監督的職員在 2008 年為 18 名，2014 年為 119 名，人力上仍略顯不足。
2. 當初投入這個機制時，韓國國民有錯誤的迷信，以為戴上這個機器就會控制對象的腦波，讓對象無法有犯罪的思想和行動。
3. 戴上這個機器便能追蹤移動位置和活動紀錄，有效的阻止犯罪者再犯，因為當刑事案件發生時，就會對該地區攜帶電子腳鐐的犯罪者進行更嚴密的監控。
4. 目前最嚴重的犯罪對像是性暴力犯罪，所以在統計資料上會以性暴力犯罪者的再犯機率為主要觀察數據。實行此機制之前的五年，性暴力犯罪的再犯率有 14.1%，實行之後再犯率減少九分之一（約 1.5%左右 ）。雖然有獲得重大成果，但國民對國內的安全還是有很高的期望，也因此不斷擴大社會安全網的制度。
5. 目前全韓國監控的人數有 2,020 人。

◎ 雙方進行座談與意見交流

◎ 左：本部保護司司長致贈禮品、右：中央管制中心所長致贈紀念品

◎ 參訪人員與中央管制中心所長合照

行程五：國立法務醫院

一、機關介紹[24]：

國立法務醫院隸屬於法務部犯罪政策預防局，成立目的在於因精神疾病而犯罪、藥物成癮如麻醉藥品、酒精或其他藥物、性疾患治療，高度再犯且需要特別教育，根據法院決定接受治療及保護，至該機關進行高度戒護之治療處遇，以預防第二次犯罪並促進更生。國立法務醫院係為有治療功能的教導所（即監獄）。

圖 6.21　國立法務醫院鳥瞰圖

表 6.6　國立法務醫院人力資源及設施

人力資源	設施
➢ **配額：359 人** ♦ **一般服務：** 醫生 17 人, 護士 91 人, 臨床心理學家 5 人, 其它 50 人 ♦ **技術服務：** 護理助手 127 人, 技術員…等 52 人 ♦ **特殊服務：** 職業培訓講師 6 人 社工…等 11 人 ＊ 額外人員：實習生 8 人 公共衛生醫師 2 人	➢ **占地：302,882 平方公尺** ♦ 路面用地 121,543 平方公尺 ♦ 道路和樹林…等 181,339 平方公尺 ➢ **建築物：51,261 平方公尺** ♦ 病床 27,466 平方公尺(1,200 張床） ♦ 辦公室和分館式建築…等 19,340 平方公尺 ♦ 急救站 4,455 平方公尺 （4 棟樓,65 戶）

[24] 資料來源：103 年 10 月 29 日國立法務醫院簡介

（一）硬體環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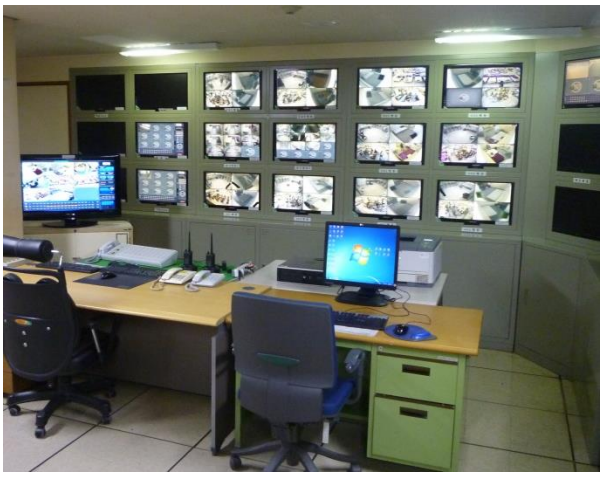

◎ 左：中央控制台、右：病房畫面

◎ 左：藥局、右：家屬會面室

◎ 左：操場、右：電腦教室

（二）職業技能培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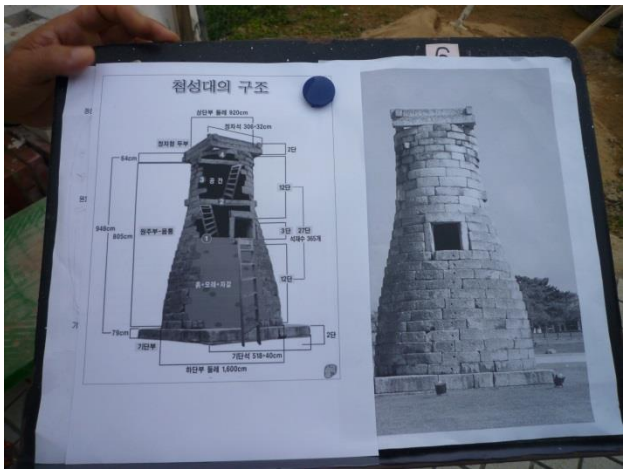

◎ 左一：仿古建築疊磚、左二：古建築圖、左三：油漆職訓
右一：磚塊製作職訓、右二：油漆職訓、右三：燙衣職訓

（三）相關藝術教育

◎ 左上：音樂治療或心理劇場地、左下：毛線編織、右上：陶藝製作、右下：書法教育

二、業務概況：

（一）治療之對象及期程[25]

有關國立法務醫院處置之病患種類，共分為四種，包括遭判刑入監或其他處分因身心問題不予處分或減刑之精神疾患、藥物成癮（均為二級毒品 ）及酒精成癮者、性侵害犯罪及心理評估後遭拘留者。相關對象種類及實行時間本設施，分述如表 6.7：

表 6.7　治療之對象及期程

處置種類	對象	實行時間
種類一（精神病患）	殘疾人犯罪後遭判刑入監或其它處分，但因其心理和生理的殘疾而不予處罰或給予減刑者。	15 年以內
種類二（藥物/酒精 成癮者）	犯罪後遭判刑入監或其它處分，且犯罪人習慣性（成癮）食用；飲用；吸食；注射毒品；精神疾病藥物；大麻和其它有濫用情形或造成傷害的物質。	2 年以內
種類三（性侵犯）	有戀童癖或性虐待等奇怪性癖好的性疾患因性犯罪後遭判刑入監或其它處分。	15 年以內
心理評估後遭拘留者	應法官，檢察官，警察所求進行犯罪心理測驗者。	1 個月

[25]資料來源：　：103 年 10 月 29 日國立法務醫院簡介

（二）進入該機關及釋放流程[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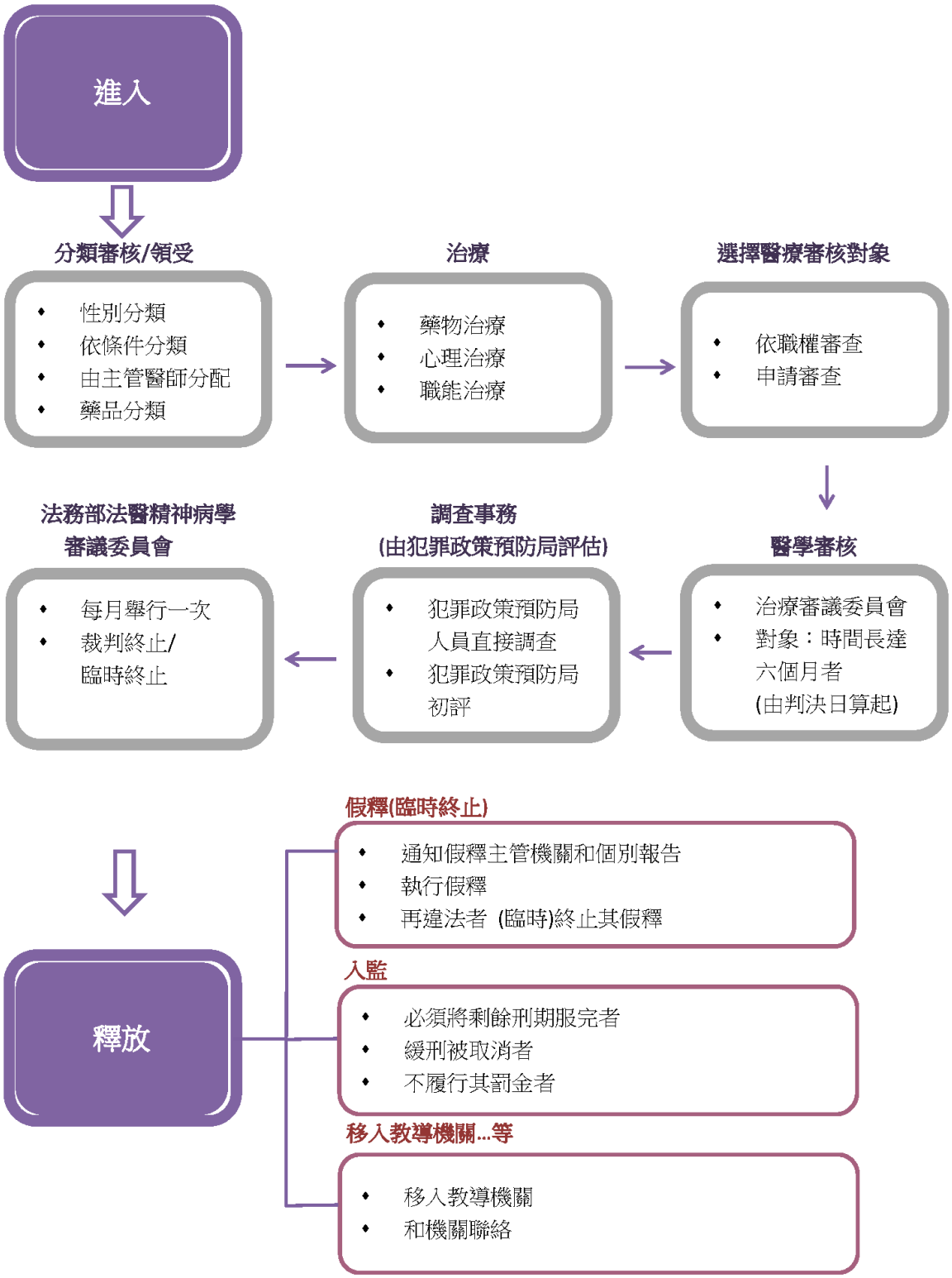

圖 6.22　國立法務醫院作業流程

[26] 資料來源：　：103 年 10 月 29 日國立法務醫院簡介

（三）犯罪心理評估程序[27]

(一) 犯罪心理評估的系統運作

精神科醫師以被法官，檢察官，警察要求做心理評估之人（犯罪嫌疑人或被告）的醫學診斷書為依據來進行專業的心理評估並公布其結果。

(二) 測試方法

- 精神科醫師藉由匯集犯罪嫌疑人或被告的精神科訪談、多種測驗、看護記錄、入院期等資料來撰寫意見。
- 心理評估時期：被監禁於病房進行心理評估的時間平均為 1 個月。

(三) 測試現狀

- 在韓國有百分之 85 的犯罪心理評估實行於法庭的精神病學研究所。
- 近 5 年被監禁於病房進行心理評估的人數如表 6.8：

表 6.8　近 5 年住院進行心理評估的人數

年份	2006	2007	2008	2009	2010
人數	360	417	461	537	631

＊ 相較於 2007（417），2010 年心理評估的人數增加百分之 47。

- 每件心理評估案花費估算：約 170 萬～200 萬韓元，全額繳入國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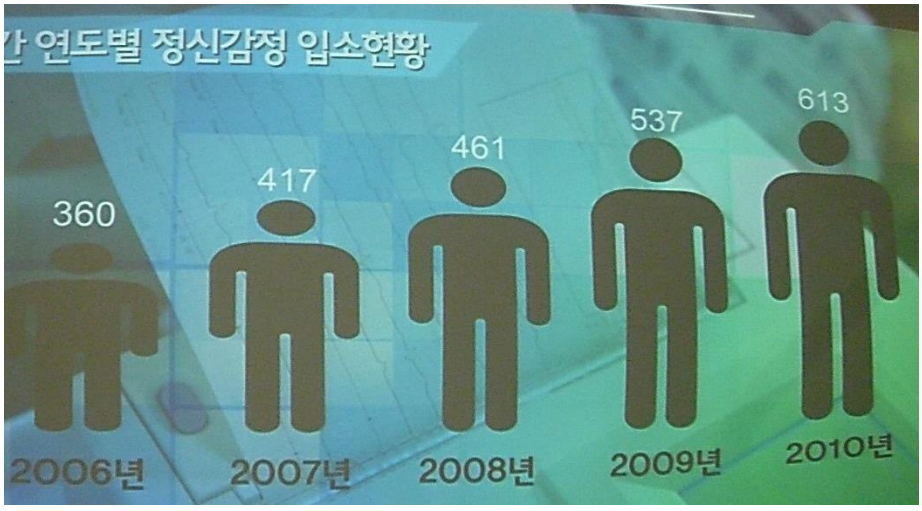

◎ 歷年收容治療人數（2006-2010 年）

[27]資料來源：　：103 年 10 月 29 日國立法務醫院簡介

(四) 犯罪心理評估程序

- 犯罪心理評估的提前預約系統實行流程，如圖 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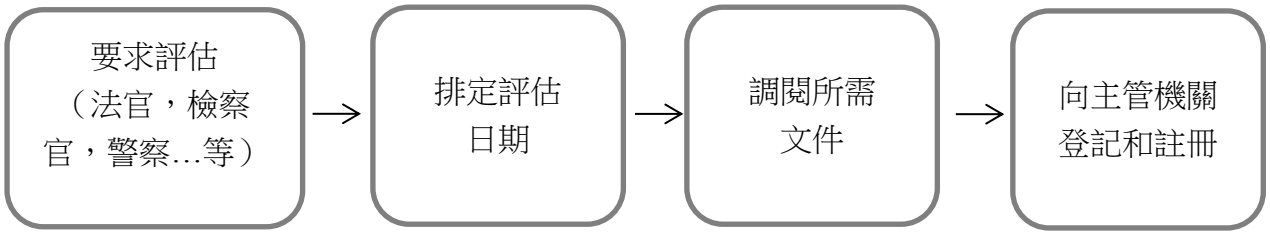

圖 6.23　心理評估實施流程

＊ 評估時程的安排取決於監禁終止日和審判日。

（四）毒品戒癮處遇

領受需要醫療的對象和監禁毒癮成癮者，藉由深入診斷和有系統的治療以及康復訓練來預防再犯和幫助他們重回社會。有關該處遇之戒治及復原中心成立時間如下：

- 1996.4.15：毒癮戒治中心開幕
- 2004.1.29：毒癮復原中心開幕

該處遇之人力配置人數、種類及機關所占面積、基本設施，簡述如表 6.9：

表 6.9　毒品戒癮處遇之人員及設施概況

人員	設施
➢ **配額：35 人** • **總負責人：1 人（醫師）** • **培訓管理人員：23 人** 驗收及醫療部門人員 7 人 護理助手 16 人 • **戒癮治療人員：11 人** 醫師 1 人,護士 8 人, 臨床心理學家 1 人 社工 1 人	➢ **總面積：2,893.4 平方公尺** • **看護區** 病房 2 大間共 14 室 保護室,禮堂…等 • **訓練中心** 集體治療室,教室,學習室…等 • **運動場** • **溫室**

毒品戒癮處遇之訓練與康復治療活動分為兩種，一為戒酒訓練、二為戒癮訓練，又戒癮訓練分為三階段實施，分述如表 6.10 及 6.11：

（一）戒酒訓練

表 6.10　戒酒訓練實施計畫

對象與計畫	實行時間
客觀地了解酗酒者和其伴隨著精神疾病的問題並讓酗酒者知道飲酒的有害影響以便增強其戒酒的意願。	從進入中心到被釋放。
協助訓練,精神疾病集體治療,情緒管理 淨化心靈治療,心理健康治療,12 個步驟…等。	

（二）戒癮訓練（初期/治療/復健訓練）：

表 6.11　戒癮訓練實施計畫

分類	目標與計畫	實行時間
初期訓練	藉由對個人的天賦和人格特質進行深入的診斷來最佳化治療和培訓活動中的穩定度。 視聽教育、人權教育、藥物濫用的諮詢。	從進入治療訓練和復健訓練之前的期間 (一個禮拜之內)
治療訓練	藉由對藥物濫用進行全面性和系統性的訓練讓病患扭曲的思想和認知系統有所改變。 針對藥物濫用進行矩陣-K、NA 的 12 步驟、情緒管理、預防教育等治療、預防教育可防止復發、治療步驟(臨床心理教育)、邀請成功戒癮者、歡笑療法、寫書法、danhak。	12 個禮拜 (Haeoreum 1,2,3 班)
復健訓練	藉由具體行動使病患放棄藥物並培訓其對社會的各種適應能力來預防病患的藥癮復發。 幸福的 48 步驟、心靈淨化訓練、心理健康的教育和治療由毒癮所引起的併發症、音樂療法、心理藝術治療、對性犯罪者進行法治教育、寫書法、danhak、紙藝、職業培訓。	12 個禮拜 (訂承諾 1,2,3 班)

（五）性犯罪處遇[28]

由唯一、最大的國家級研究院對逐日增加的性疾罪犯進行專業治療，累積和利用有關於性侵犯的治療及復健等相關數據來進行專業研究活動。有關該處遇之康復治療中心成立時間如下：

- 2008.12：性侵犯康復治療中心開幕（100 張床）
- 2011.8：性侵犯康復治療中心重新開幕（200 張床）
- 2011.9：增開兩間治療中心（共 3 間）

該處遇之人力配置人數、種類及機關所占面積、基本設施，簡述如表 6.12：

表 6.12　性犯罪處遇之人員及設施概況

人員	設施
總共 42 員 • **精神病醫師 2 人** • **護理支援** ➢ 護士與護理助手 21 人 ➢ 醫療管理及心理諮詢師 7 員 ➢ 臨床心理學家，社工，職業教育及培訓的指導員共同實施測驗、治療、康復訓練	**總占地 8,409 平方公尺** • **有 200 張病床的大樓** ➢ 1 樓~4 樓病房區 ➢ 體育館,教育中心及其他空間 • **有 100 張病床的大樓** ➢ 1 樓辦公室和教育中心 ➢ 2 樓~3 樓病房區及其他空間 • **附屬建築** ➢ 職訓中心

(一) 需受醫學治療和保護管束的性暴力犯罪對象

- 有性倒錯和再犯可能並同時需要治療和保護設施的性疾患。
- 罪刑是強姦、強制猥褻行為和準強姦。

(二) 性衝動藥物治療制度

性衝動藥物治療為具再犯危險性之衝動治療患者用藥物治療方式抑制性衝動時間，藉由心理治療計畫及保護觀察官之科學管理體系，治療精神障礙，防止性暴力犯罪再犯之制度。

依據治療監護法第 2 條第 11 項第 3 號之規定，小兒性嗜好者（即戀童癖）、性虐的加虐症等性癖，該當精神障礙者監禁刑者，以專門鑑定的健康課程降低性的異常癖好，恢復自信行為。

1. 藥物治療之效果

[28]資料來源：　：103 年 10 月 29 日國立法務醫院簡介及性衝動藥物治療制度簡介。

於美國奧勒岡州自 2000 年至 2004 年觀察假釋犯性犯罪者，未實施藥物治療再犯率為 18%，實施藥物治療者再犯率減少到 0%。

2. 藥物治療之施行

性衝動藥物治療制度自 2010 年 7 月 23 日制定「性暴力犯罪者性衝動藥物治療相關法律」[29]，隔年 7 月 24 日開始施行。於 2012 年 12 月修訂相關法律條文，並訂於 2013 年 3 月 19 日施行，其中將被害人未滿 16 歲之規定刪除。

3. 藥物治療之類型

藥物治療之類型、適用法條、各項治療命令期間及決定主體，分述如下表。

表 6.13　藥物治療之類型

分類	適用法條	治療命令期間
徒刑終了以後之治療命令	第 8 條	法院確定期間（最長 15 年）
假釋犯等治療命令	第 22 條	
假釋終了等治療命令	第 25 條	保護觀察期間由治療監護審議委員會確定期間（最長 3 年）

4. 藥物治療之用藥方法

(1) 注射抑制性激素賀爾蒙之對抗劑。

(2) 注射後，腦下垂體抑制睪固酮之產生。

(3) 因睪固酮缺乏而去除性衝動。

藥物治療制度為防止出所後再犯以致危害社會之保安處分制度，種類包括治療監護和治療命令類型，治療監護優先執行，出所前三個月移送治療監護所，出所前兩個月治療命令執行。出所兩個月前治療理由為藥物投藥事先檢查及藥物投藥之效果等，以確認副作用。

5. 藥物治療之治療費用

該處遇之費用全部由國家負擔，使用之藥物品項如表 6.14 所述：

表 6.14　治療藥物種類及品項

種類	品項
抑制及減少性激素產生（性暴力犯罪者性衝動藥物治療相關法律施行令[30]第 8 條第 1 項第 1 號）	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Leuprolide acetate
	Goserelin acetate
	Triptorelin acetate
妨害性激素藥物（性暴力犯罪者性衝動藥物治療相關法律施行令第 8 條第 1 項第 2 號）	CPA, Cyproterone acetate

[29]詳附錄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30]詳附錄四：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心理治療內容

每月一次會議以上，一小時內進行認知行動治療內容包括：1.認知扭曲和悖離常理之性嗜好修正 2.治療動機之提升 3.增進對被害者之同理心 4.培養社會適應能力 5.防止再犯悖離常理之性衝動 6.其他預防危害之必要事項。

7. 治療命令執行階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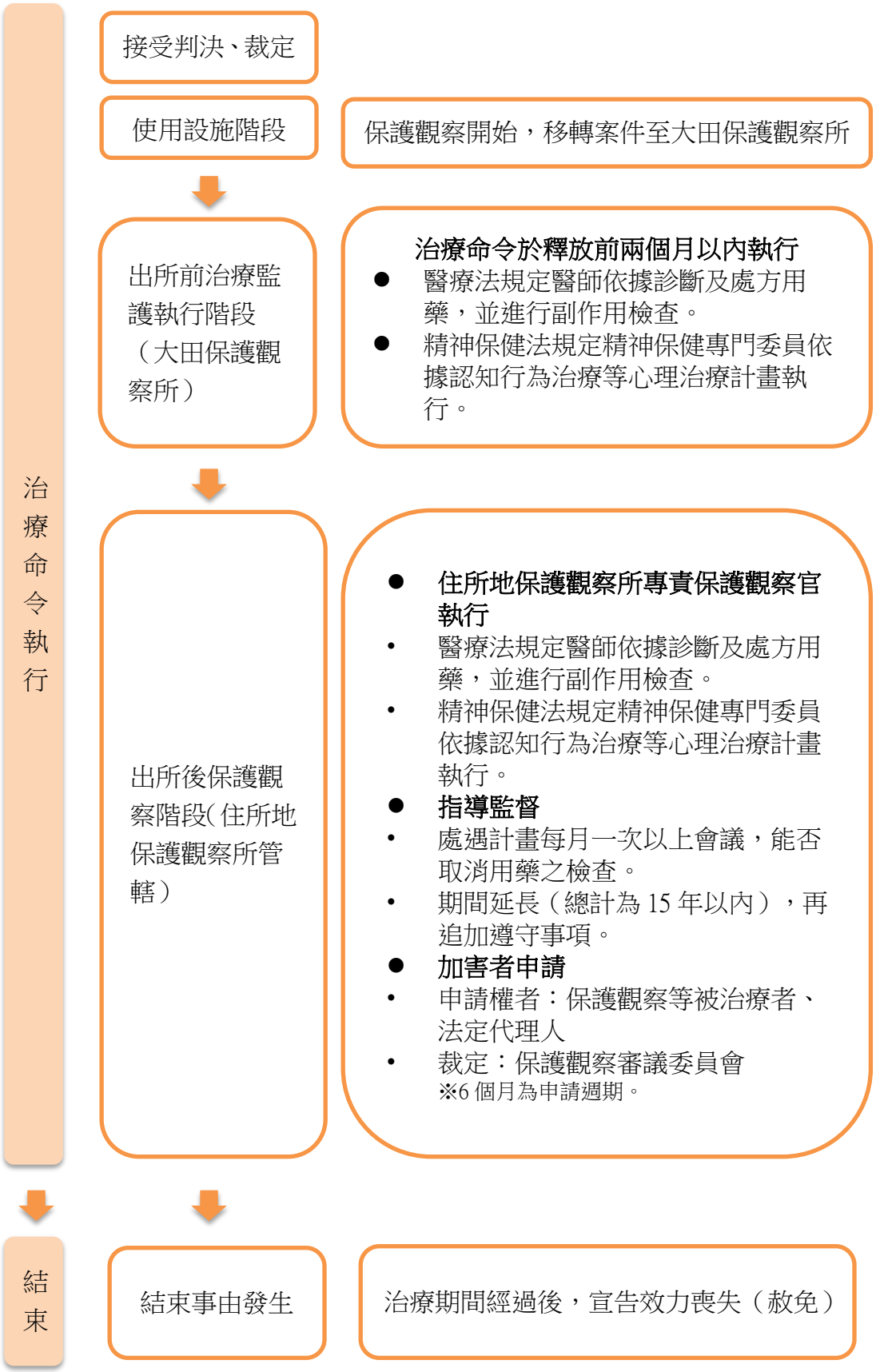

圖 6.24　治療命令執行流程

8. 康復治療

- 醫療康復治療

  藝術治療，戒酒訓練，冥想，健康檢查，日常生活訓練，基礎學習能力培訓，衛生教育，心理健康教育，大型集體活動…等。

- 職能復健

  烘培訓練，洗衣訓練

- 返回地方社區

  心理健康訓練，釋放後培訓，追蹤管理…等。

（六）意見交流

參觀治療監護處所雙方進行意見交流，僅將雙方對話內容分類並摘述要點如下：

(一) 監護治療之實施對象

1. 為心理患者，因在教導所（即監獄 ）無法受到治療，1987 年開始實施監護治療，目前有七、八百名患者。
2. 強姦犯有精神疾病有精神病的狀況，此類型的精神障礙輕微者會建議轉到教導所，重症才留在監護處所。
3. 該所不接受反社會人格，且法官不會將反社會人格判到監護處所，因為很難治療，這樣的人會直接送教導所，出所（教導所 ）後直接戴電子腳鐐。
4. 需要住院之毒品犯係為服用藥物過當中毒者，因服用藥物導致心理障礙者，喪失自我判斷者，服用藥物犯罪者會先到教導所，心理有問題或精神錯亂精神喪失的人才會到該所。

(二) 監護治療之費用：

1. 無需自費，出院的人定期返院領藥也是政府負擔，政府將提供 10 年的追蹤服務。
2. 並非所有的退院者都回來領藥，約 10%-40%左右會回來領藥，到一般醫院領藥需自費。
3. 毒癮患者及及性侵害犯罪之治療費用負擔頗重，亦有民眾疑慮為什麼要花這麼多錢治療這些人，但因社會安全及社會防衛所需，仍是必須有此政策。
4. 化學去勢的費用，一年一人藥物部分韓幣五百萬，全部國家負擔。

(三) 監護治療之療程：

1. 治療期程最長十五年，但有些患者僅需六個月，係由醫生依照行為的輕重症判斷所需療程長度。
2. 目前最長接受化學治療之療程約為兩年三個月。出院有 7 人，已出院兩年左右，均無再犯。
3. 接受藥物治療前會有一連串的身體檢查、心臟病、怕打針是否有反效果等評估，並非每個人都可以接受治療，目前接受化學治療者總共有五十名患者。
4. 心理治療的程序跟日本美國差不多，治療法受馬歇爾博士影響，以 CBT 認知行為治療為最常使用的方式，如效果仍無法變好則用藥物治療。
5. 性疾患者除接受藥物治療外，還有心理治療，會讓犯罪者知道做這件事

情是錯的，讓他們知道不能做這件事情，才能讓根除問題。

(四) 監護治療之執行過程：

1. 法院法官在判決前醫生會給予法官身心狀況評估表，協助其作決定，法官認為有必要前往國務醫院，再決定要入院住幾年。
2. 出院前第一階段醫生會組成一個審查委員會，審查性侵害犯罪者是否有再犯機率、家族關係、社會適應；第二階段將第一階段之資料送到法務部，法務部作第二階段之審查，由法官、檢察官、宗教人士評估是否可以退院。如第二階段仍不符合退院標準仍是不能出院。
3. 醫生建議可能要來此治療，患者本人也要同意才可以來。如經過法院判三年需到該所，醫生評估後認為應該接受治療，當事人也要同意才會開始治療。
4. 治療的來源有兩種：一種是判刑後醫院認為其接受，個案同意而做、一種是藥物命令，法院判決接受化學治療兩三個月。
5. 保護觀察官認為其再犯可向法院申請，命其回到監護處所。這個月去哪些地方做哪些事情，如酗酒，就會取消他的退所資格，經法院申請再回到此。

(五) 化學治療之頻率及藥物使用

1. 化學去勢注射頻率不一定，有一個月、三個月、六個月三種，一個月一次，藥物開發變成三個月到六個月都有。剛開始出院給一個月的藥物，再次回診時會慢慢延長時間如三個月或六個月。主要是三個月六個月較常用。在社會職場工作、家庭適應良好就會直接給三個月的注射藥物，去指定的醫院做注射。
2. 藥物副作用包括：骨質酥鬆症及關節疼痛，所以開始施打前會先了解其身體狀況，開始施打時亦會隨時追蹤其身體狀況，調整藥物用量，對當事人高密度的檢查，如有必要給予犧毒劑，狀況減輕再進行治療，有些人打針會來此做骨質酥鬆症的檢查。
3. 藥物是國外進口的，此為治療前列腺癌的藥物，效果在降低賀爾蒙。

(六) 化學治療之效果

1. 化學治療的對象生理與心理上的變化，患者接受治療前還是有可能發生性侵害事件，接受治療的過程中，曾有患者說：「有種野性的感覺消失了!」，剛開始有些人會說身體很熱、腳很痛，後來這些感覺就慢慢不見，其他身心無太大變化。
2. 韓國是亞洲第一個做化學治療國家，法律剛開始施行時，有性犯罪者自願打針想讓其性衝動可以消失，但是光是用藥物治療是無法抑制男人性慾，所以內外管理都必須重視。

(七) 欲在其他地方建立同等類型的醫院但非常困難，因社區可能會排拒。本院從 1987 年成立到現在，職員都是附近的居民，且定期積極與居民互動並提供不錯醫療服務，有與社區建立良好互動關係。

(八) 監護處所的戒護等級高，入院的人不得外出，除非家中有發生變故會派員陪同前往。

(九) 有關基因問題造成性犯罪，使一生必須接受治療之問題，有雙胞胎之案例，其中一名因性暴力而入獄，後來同生弟弟亦如是，推論有遺傳之可能性，該所曾為此案例寫過國際論文，並進行發表。

(十) 有關毒品犯戒癮部分，韓國沒有海洛因患者，故未使用美沙酮替代療法，毒品犯之心理治療比藥物治療多。

(十一) 韓國無社區戒癮治療，除了國務醫院外，一般人要戒毒就是去大學的教學醫院。

(十二) 在醫院裡不會使用電子腳鐐，出所後去保護觀察所才會使用電子監控，重度殺人等服役者會被要求戴電子腳鐐，化學治療被注射的人有些有戴、有些沒有。

(十三) 通常精神障礙再發生或無法控制自己的行為才會以藥物注射，或結束後戴電子腳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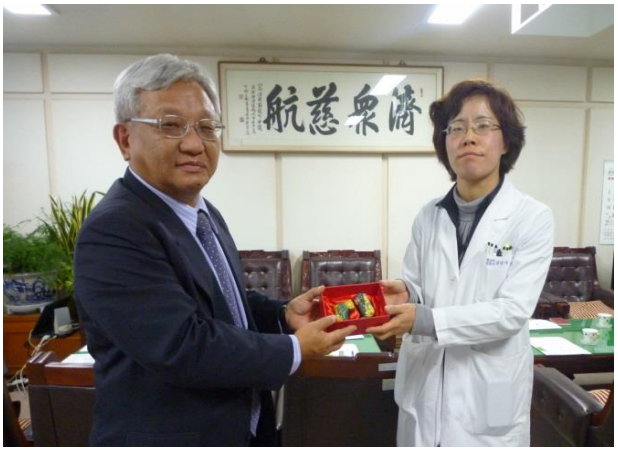

◎本部保護司司長致贈法務醫院院長及性犯罪治療部門主任紀念品

◎ 法務醫院人員與本部參訪人員合照

行程六：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分部

一、機關介紹[31]

(一)、 沿革

1. 1987 年 2 月 13 日（依大統領 12074 號令）設立更生保護會仁川支部，1995 年 6 月 1 日成立「韓國更生保護公團」，並在 2009 年 3 月 27 日改名為「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2. 韓國法務福祉公團設立目的：韓國法務福祉公團是依據「保護觀察等相關法律」[32]和「社會福祉事業法」[33]等，目的是藉由法務保護服務，逐漸達到社會復歸，並且達到有效預防犯罪。

(二)、 組織架構

韓國法務保護福址公團為特殊法人，為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附屬機構，本部位於首爾，由本部與地方警察廳所在地共 2 個中心， 14 個支部，7 個支所等構成。全國現有理事長等職員 175 名及 4,300 多名志工，仁川支部則有 500 多名社會志工。

1. 與監獄、警局的關係

(1)就監獄而言，韓國法務保護福址公團為出獄者的社會適應鄰接機構，給予個案社會福祉支援，提供就業訓練、生活安置、心理輔導及家庭支持等協助，為銜接關係。

(2)對於出獄者，於出獄前一個月，會由社會志工入監進行個別化的諮商，訂定特殊保護支援策略。

(3)每個支部會配置一名心理治療師，造訪的仁川支部也有專業（含專業隔音）的諮商室。來此入住接受就業訓練的人在一開始通常會先進行一些心理測驗。

(4)就地方警察廳而言，韓國法務保護福址公團提供安全安需求支援，兩者為相互協力關係。

2. 與保護觀察所的關係

(1) 韓國法務保護福址公團是在個案本人同意下給予社會支持或更生保護，保護觀察是根據法律強制執行之義務 。

---

[31] 參照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提供之簡報資料及問答說明

[32] 請參考附錄一

[33] 「社會福祉事業法」第 2 條。另也依據聯合國（UN）會議決議文（1960）

(2) 保護觀察所諮詢後，認為個案有工作需求、需要給予回歸社會支援者，可轉介/委託韓國法務保護福址公團給予保護與協助。

(3) 雙方為相互協力，兩利關係。

(三)、 經費來源：

韓國法務保護福址公團的整體預算為 219 億韓元（約合台幣 6.23 億元），國庫補助金為 164 億韓元(約合台幣 4.67 億元)，公團自有資金為 55 億韓元(約合台幣 1.57 億元)。

◎ 本部考察人員與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分部接待成員於該分部大樓前合影

◎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幹部與我方人員進行交流座談

二、業務概況

2014 年仁川支部的業務內容主要包括：食宿供給、職業訓練、就業媒合、就業成功 package、住居支援、創業支援、緊急援助、事前諮商、社會適應教育、學業支援、心理諮商、事後管理，其他獨立支援等，各類服務加總共可提供 2,941 個名額，現已有 2,394 人接受各類服務。細節分述如下：

(一)、 食宿提供

1. 提供無工作或無居所者住所、衣物、用餐等服務，並透過給予社會調適教育協助其健全復歸社會。
2. 根據保護觀察相關法令，原則採自願申請制，法院亦可指定、技訓老師亦可住宿，但每 6 個月需重新申請（需經由審查通過），最多可延至 2 年，一般多住 5-6 個月。使用者無需負擔任何費用。仁川支部目前最多提供 34 床位。目前全國提供 600 多名食宿幫助。
3. 入住者可以自由出入，並無強硬的限制。但入住的更生人如果有嚴重違規，經過警告等一定程序，也有可能被迫遷出。

◎　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廚房設備

◎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個案安置的居住環境

(二)、 職業訓練

1. 機構提供必要性、市場導向性的就業技能訓練，以協助其能成功、穩定就業。這些技能訓練是以安定就業為主要目的，因此其訓練優先順序為：1.強調現場實務操作、2.資格/證照取得。職業訓練期間給予與一般勞動市場類似待遇，模範教育生另可獲得技訓獎金。

2. 特色職訓：

   全國各支部發展不同的專業職業訓練，因此，需要某種專業職業訓練的個案，會被媒合到不同支部接受訓練。例如南部慶上道地區有「機械維修」的專業職訓，也有支部提供「農業技能」訓練。

   ◎目前仁川支部的職訓內容包含：

   （1）特殊鎔接（ARC,CO2,TIG,GAS）技能取得處遇中心

   （2）幸福 Cleaning Center 洗衣中心

   （3）其他技能則委託中心或學堂。

3. 仁川支部特色職訓-「**特殊鎔接（ARC,CO2,TIG,GAS）技能取得處遇中心**」

   (1) 2010 年政府企劃財政部與福券基金投入 14 億 1 千萬（約合台幣 4 千餘萬），2011 年 12 月 21 日竣工。

   (2) 特殊鎔接（ARC,CO2 ,TIG,GAS）技能訓練一期的訓練是 2 個月（共 240 小時），週一至周五上午 10 點到下午 5 點，每年共有 5 期，可以隨時報名。該處也提供食宿，所有費用由國家全數支出（每月 40 萬韓圜，約台幣 11500 元），成員於該機構就業訓練及居住期間可以長達 2 年，但通常為 4~5 個月。[34]

   (3) 每期約 12 人報名，2012-2014 共 193 人入校，159 人結業，取得工作者 110 人，就業率為 69.2% 。上班地點為現代重工業、造船所、一般企業或工廠等。

[34] 2012 年至 2014 年共有 193 名入學，當中 159 名完成訓練，110 名成功就業，就業率達 69.2%

◎　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的鎔接訓練場所

4. 仁川支部特色職訓-「**幸福 Cleaning Center 洗衣中心**」

(1) 2011 年 6 月法務部與韓國 SK 財團簽下合約，並為了更生人的就業而與 New life 財團合作，成立「幸福 Cleaning Center」。洗衣中心的設備主要是由韓國 SK 公司提供，New life 財團則負責出所者雇用。

(2) 「幸福 Cleaning Center」主要工作為清洗衣物、被單等，其主要客源是法務部轄下機關，如：仁川海關、仁川監獄、仁川出入境管理局。其營業收入則完全歸入於洗衣中心。

◎ 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建物旁洗衣事業部外觀（仁川幸福 CLINGING 中心）

◎ 仁川支部長向本團人員介紹洗衣事業部的運作

(三)、 就業媒合

1. 由企業界人士組成的法務保護委員、法愛委員、慈善事業熱心實務家等建立連結，針對未就業者提供服務。
2. 就業媒合的部分是先透過支部的員工聯繫，再帶個案至媒合的企業，而非由個案直接去公司面識求職。

◎ 提供就業合作之企業團體榮譽告示牌

(四)、 住居支援

1. 針對破碎家庭、家庭解體者，為了協助復原家庭機能，法務部結合「韓國土地住宅公社」，提供需扶養家庭而居住環境不良者低廉租金住宅， 低於約市價 1/3 的居住環境。
2. 該支部提供更生人 150 戶的居住資源（女性更生者的家庭為優先，最長可到 10 年，期間僅需支付電器瓦斯等費用），目前仁川已提供 145 戶，全韓國共有 1400 多戶。福祉公團同時對這些家庭提供心理諮商服務，地點為福祉公團或透過大學生志工進行外展服務。
3. 對於接受住居資源而在一般社區居住的更生人，機構予以身分保密，鄰居並不會知道個案是更生人身分。

◎ 仁川支部長介紹機構內各種公共空間，包含各種就業情報及資源檢索，機構內並設置意見箱。

(五)、 創業支援

1. 針對小資本創業需求者，提供最多 5000 萬韓圜（約合台幣 143 萬元）的創業貸款協助，目標為協助生活自立。
2. 創業貸款是由「微笑金融中央財團」企業依據協約內容提供支援。
3. 創業保證金是付給福祉公團的合作商家，而非直接借給個案。
4. 目前仁川有 9 個創業店面，銷售產品內容包含辦公用品、建築土木五金、油漆等。

◎ 後援會活動情報告示

(六)、 緊急援助

優先對於有生計困難者緊急需要的治療費、就業交通費、米糧、月租或貸款等緊急金援協助。每次協助金額大約 10~20 萬韓圜（通常僅一次機會）。資金來源為社會捐款、國家預算。

◎ 仁川支部長對機構環境進行簡報，並熱心一一回答考察人員的提問。

(七)、 出獄前的諮商

1. 對於出獄者，於出獄前一個月，會由社會志工入監進行個別化的諮商，訂定特殊保護支援策略。
2. 每個支部會配置一名心理治療師，造訪的仁川支部也有專業（含專業隔音）的諮商室。來此入住接受就業訓練的人在一開始通常會先進行一些心理測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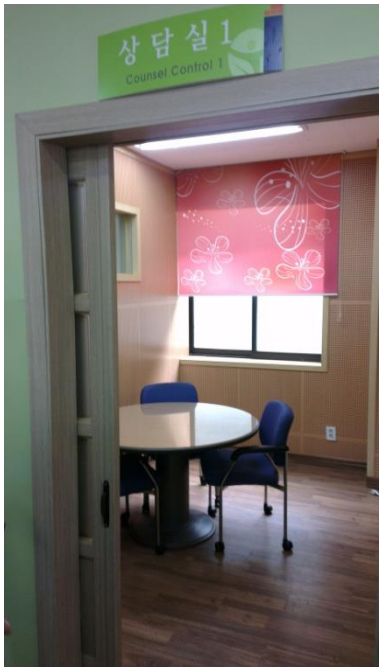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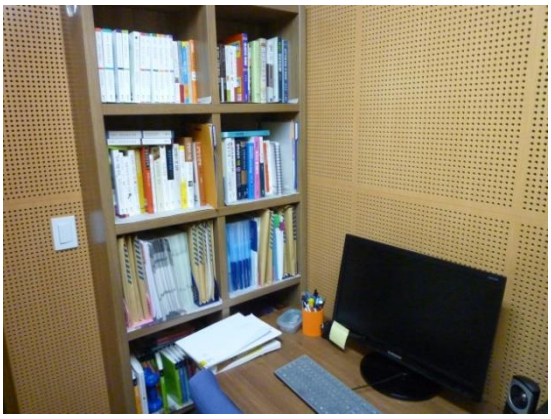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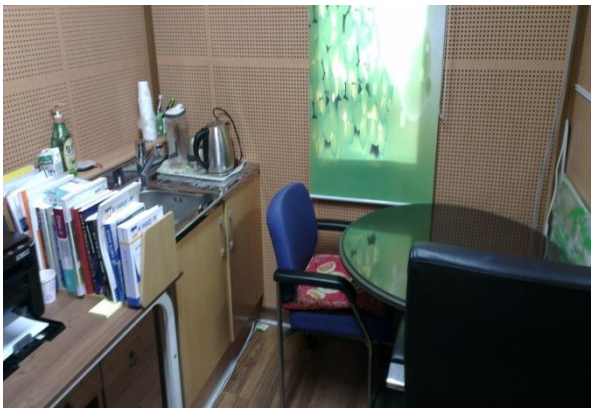

◎仁川支部內設有多個不同的諮商晤談室，其中一間諮商室並具有電腦及隔音設備。

(八)、 社會適應教育

為加速適應社會、增進人際關係而施以各種認知輔導教育。

◎　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內的教室

(九)、 合同結婚

1. 對因某些家庭因素或不可避免的事由而無法結婚者協助舉行集團結婚，目前全國含仁川支部共有 145 對，本月也促成 6 對。
2. 此業務由仁川支部首創，之後擴及到全國。

(十)、 家庭復原事業

提供個人、家族、兒少的商談，並提供因貧困而無法就學之子女獎學金（小學生 20 萬韓幣、國中生 25 萬韓幣、高中生至二年級為止 20 萬韓幣）等協助更生人。

(十一)、 事後管理

為了預防再犯，最長在一年期間，1~2 月一次<電話訪談>或<實際查訪>。

◎ 仁川支部內的員工辦公室，辦公人員均配帶識別證，辦公桌前並標示服務項目及職員相片，以方便前來求助者進行辨識。

如上所述，在協助住居支援與就業服務等主要核心業務方面，法務保護福祉公團的主要特色可歸納如下：

1. 國家資源之大力投入，多數服務（包括電子監控及職訓安置等）皆政府付費。
2. 技能訓練採特色職訓，各支部發展不同專業課程。
3. 辦公場所設計採技訓、食宿、輔導等 All-in-one 設計。
4. 安置原則採自願申請制度，亦接受保護觀察所或法院轉介，提供食宿，生活自主管理。
5. 安置時間採期限制，最多 2 年，需每 6 個月申請一次。
6. 韓國犯罪人就業轉銜制度之主要特色。
7. 結合韓國土地住宅公社提供全國 1400 多戶小家庭優惠租屋住居支援，並提供心理諮詢。
8. 與民間大企業結合緊密，包括設備贊助及人員雇用。
9. 就業斡旋結合實務家連結網絡與福祉公團員工的聯繫來媒合工作。
10. 創業保證金是付給福祉公團的合作商家，而非直接借給個案。

三、意見交流

◎　實際參訪及聽取簡報後於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會議廳進行意見交流

問：法務保護福址公團的性質是屬於台灣之「更生保護會」或是「中途之家」性質？

答：

法務保護福址公團早期名為更生保護會，但現在的性質除了早期的更生保護業務，在更名後更逐漸納入更多社會福祉的提供，但比較類似台灣的<更生保護會>而非<中途之家>，不過也具有許多「中途之家」的功能與服務。受訪代表表示，早期在「更生保護會」時代曾跟台灣有過一些交流，最近的外國考察則是三年前曾去新加坡訪問過，若有機會也希望到台灣訪問。

問：組織架構中有 14 個支部，7 個支所。請問支部與支所的區別及差異為何？

答：

支所是在支部較無法提供協助而鞭長莫及的情況下設立，支所也會提供青少年及女性的居住環境，但即使支所位置太過偏遠，支部仍會提供協助。

問：韓國<法務保護福址公團>與<保護觀察所>的關係

答：

1. 韓國法務保護福址公團是在本人同意下給予社會支持或更生保護；保護觀察（觀護）是根據法律強制執行之義務
2. 保護觀察所認為需要給予穩定的回歸社會支援者，可委託韓國法務保護福址公團給予保護與協助。因此雙方為相互協助關係。

問：保護福祉公團的員工是否為公務員？

答：

法務部保護福祉公團 （屬於特殊法人）之職員是自行徵求雇用而非國家考試，而仁川支部當中目前擁有500多名社會志工。志工也可能提供就業機會，過去曾有「一企業雇用一名更生人」的口號。

問：保護福祉公團主要的服務對象有哪些？有沒有非自願性而被命令前來的個案？是否有仍被電子監控的個案來此？是否有毒品犯罪者的個案？

答：

1. 仁川支部最多提供 34 名更生者同時居住，主要以男生為主，女生則是安排到其他專門的支所，對於是什麼類型的犯罪者申請入住並沒有特殊的限制，但仍會事先評估。
2. 入住成員身分主要為<受保護管束人>或<刑滿出獄者>，當中並沒有司法強制命令下入住的個案。整體來看主要是輕度犯罪者，也沒有仍在被電子監控的個案來此居住接受訓練。
3. 福祉公團主要個案並不包含毒品犯（但有計畫將來針對酒癮者進行協助），毒品犯罪者是另外委託其他機關（如法務醫院）處理，事實上，韓國毒品犯罪比率並不高。

問：保護福祉公團的職業訓練內容是如何產生？

答：

1. 職業訓練的內容還是必須符合實際就業的需要，換句話說，這些職業訓練的設計是為了讓來此接受訓練的人能在受訓結束後就能馬上找到工作、投入職場，因此，職業訓練的選擇會考量市場的需要、就業飽和度等現實問題。
2. 目前仁川支部主要提供「特殊鎔接」的教育訓練，而全國各支部也朝向發展不同的專業職業訓練，因此，需要某種專業職業訓練的人，會被媒合到不同支部。例如南部慶上道地區有「機械維修」的專業職訓，也有地區提供「農業技能」訓練。（註：我國更生人之職業訓練都外聘教師專案教學，但韓國福祉公團各分支單位通常有特定的職業訓練內容。）

柒、參訪心得、結論與建議

有關本考察行程之參訪心得、結論與建議，以下分就韓國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首爾保護觀察所、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國立法務醫院及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仁川支部等 5 部分，分別提出 12 點建議，包括：（一）研議設置司法保護諮詢委員會；（二）研議我國社區矯治業務回歸獨立專業之可能性；（三）提昇觀護人對於個案再犯風險之科學化評估能力；（四）精簡純化觀護業務，降低案件負荷量，強化案件管理能力；（五）科技設備監控系統需 24 小時機房管理機制；（六）科技設備監控系統需加強資料管理及資安防護；（七）科技設備監控系統軟硬體需交由專業資訊人員處理；（八）科技設備監控命令違反之法律規劃及未來發展宜交由法務部統籌；（九）國立法務醫院與社區居民良好互動，提升接受度；（十）性犯罪者治療程序及相關實施方式之參考借鏡；（十一）發展一站式的就業輔導服務模式；及（十二）「更生」與「就業協助」結合地方資源，重質不重量，特色化經營等，以下依序說明之。

韓國法務部犯罪預防政策局

（一）研議設置司法保護諮詢委員會

如前所述，韓國法務部除在全國各地設置保護觀察所之外，並另在 5 個高等檢察署所在地，分別設置有「保護觀察審議委員會」。在組成上，該委員會包括主席在內約 5 至 9 人，成員一般由法官、檢察官、教導所所長（典獄長）、保護觀察官及專家學者等擔任，主席則由法務部指派高等檢察署的主任檢察官或檢察官擔任。該委員會是一種具有學術性質的行政指導單位，目的在對保護觀察相關業務進行審查及提供建議。

反觀我國，在保護管束案件之監督與輔導上，目前有類似韓國此委員會之設計者，主要有各地方法院檢察署所定期召開之「社區監督輔導小組會議」及各縣市性侵害防治中心或衛生局所定期召開之「治療評估小組會議」；惟此二種小組會議之討論對象，均僅限於性侵害犯罪之受保護管束人或加害人，而前者常以司法監督措施之對應為重點，後者則多侷限在治療方式之調整為內容。對於性犯罪以外其他諸多犯罪類型之個案、各地所提案各類心理治療/輔導方案之審查（如計畫之適切性、具治療性與合乎需求性等）與成效評估、保護管束監督輔導方式之調整、特定高再犯風險個案之管制策略等，多交由業務承辦人依其經驗為之。（以各類心理治療/輔導方案之審查為例，該項業務承辦人通常難以同時具備現

時種類繁多之治療取向知識，如認知行為治療、宗教治療、藝術治療、正念療法、完形治療、家族排列治療及其他另類療法等，而對於非心輔相關科系專業背景或資歷尚淺之觀護人而言，難以實質審查此類方案是否具治療效果及其損益評估，其多僅能透過個人經驗為之。）我國在整體社區處遇業務上，尚缺乏一具實證基礎與經驗導向之審查與建議單位。

因此，在我國法務部架構下，就整體司法保護或社區處遇業務之執行，於臺灣高等法院檢察署（含分署）所在地，即北、中、南、東研議設置區域性「司法保護諮詢委員會」，提供具實證基礎與經驗導向之執行審查與建議，應為一可行之方向，可有效提昇我國保護管束案件執行之品質與精緻度，協助對特定案件監督輔導策略提出建議與解決方案，更可基於地方區域不同風土民情與個案特色，確實督核部分需具特定專業知識之業務執行（如治療計畫、修復式司法案件等）之成效，提昇個案滿意度並避免浪費公帑。

（二）研議我國社區矯治業務回歸獨立專業之可能性

韓國法務部經組織再造後，將原職掌成年及少年保護觀察業務之「法務部保護局」，整合位置追跡（電子監控）、少年偏差行為預防教育、法律教育及法律與秩序推廣活動等業務，成一獨立機構，並更名為「犯罪預防政策局（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在概念上認為司法保護工作之本質，即為犯罪預防（含再犯預防），且由於法務部職司政策規劃及推動工作，故在新名稱上加入「政策」二字。在組織編制上，相對應於韓國矯正本部（監禁管理）之層級，「犯罪預防政策局」為一獨立之社區矯治專責機關（非監禁管理）。

反觀我國，我國法務部矯正署在民國 100 年 1 月 1 日掛牌成立，不僅開啟國內矯正專業的新紀元，象徵我國矯正制度邁向新里程碑，機構內處遇在行政組織與職權上均較以往獨立及具彈性。然而，受刑人出獄回歸社區後，肩負機構外處遇（社區矯治）及多種刑罰轉向措施（如緩起訴與社會勞動等）的觀護體系，在組織功能上迄今仍妾身未明，尚缺乏獨立專業之職務定位與明確權責分配，加上龐雜的非本業行政業務及各式活動需求，以及受限之升遷管道，導致長年以來觀護人的士氣未能有效提升，對於職務本身的專業能力也缺乏自信與肯定。此外，監所矯正與觀護社區處遇的銜接連結，亦仍待努力。在組織架構上，我國成年觀護制度長久以來經歷過許多不同的討論，有主張與少年觀護合併，建置專業觀護體系之「觀護一元化」論述者；亦有主張需與矯正機關相互銜接，建置完善連貫矯治體系之「矯正觀護署」論述者；亦有主張成年觀護可整合司法保護相關資源，並加以專業分工並建置獨立之「觀護署/保護局」論述者。惟此些思考，在國外已有些許嘗試，如美國科羅拉多州之整合成年觀護與少年觀護並新增「區級」督導職務；及英國之整合矯正與觀護成為國家犯罪人管理服務等；而包含此次韓國

犯罪預防政策局之組織架構功能設計，前述國家之經驗或可提供我國成年觀護在組織調整上未來發展之思考[35]。

因此，如何在符合我國國情及現有制度下，研議我國社區矯治業務回歸獨立專業之各種可能性，以建立保障社會大眾安全及犯罪人再犯預防之完整服務，協助更生人成功復歸社會，均有賴於第一線司法保護工作人員士氣之提昇與專業人才養成制度之設計，此為我國社區矯治未來所需面對之重要課題之一。

首爾保護觀察所

（三）提昇觀護人對於個案再犯風險之科學化評估能力

如前所述，韓國保護觀察所的業務種類，主要有犯罪人監督、電子監控、藥物治療命令、調查、受講命令/治療命令及社會服務命令等六大項。保護觀察官依法獨立執行法院之判決及社區處遇命令，並非受檢察官指揮執行刑罰，在組織編制及業務執行上具明顯自主性，為其特色。韓國保護觀察官除了執行犯罪人監督、電子監控等保護觀察業務外，並會受理來自法院或檢察官之需求，透過科學化及客觀之方法，進行犯罪人上訴前、決策前或量刑前之調查，針對個案之人格特質、成長背景等資訊進行蒐集及研究。調查報告的相關資料會提供給法院或檢察官，藉以使法院社區判決的內容更具妥適性，或使檢察官藉以做為對法院電子監控及藥物治療命令的上訴依據，此外，調查報告同時也是保護觀察本身的重要參考資料。

反觀我國，依據刑法與保安處分執行法，觀護人依法執行保護管束，並接受檢察官之指揮，近年來在業務內容上則增加緩起訴命義務勞務及短期刑易服社會勞動等刑罰之執行工作。從刑事司法流程來看，在「預防、偵查、審判、執行、保護」5 階段中，相較之下，我國觀護人所執行業務主要以「執行」及「保護」之刑罰執行為範圍，而韓國觀察保護官之工作內容，則除「執行」及「保護」外，尚跨足「偵查」及「審判」之協助調查事項，提供科學化之評估及透過查證提昇對當事人資料之蒐集及確信。然而，觀護人或保護觀察官無論是進行刑事司法流程中任一階段之工作，其核心業務能力均係透過多方蒐集個案之資料，並藉由查訪等多重方式進行資料之確認，並以證據為基礎（evidence-based），藉以評估個案之再犯風險性，進而擬訂相對應之監督輔導策略或矯正方案。因此，提昇對於個案再犯風險之科學化評估能力，能客觀產製具證據基礎之評估報告，即成為觀

[35] 請參閱鄭添成（2011），成年觀護制度的國際趨勢觀察與思考，「回顧與前瞻—觀護三十年檢討與展望」論文集，中華民國法務部。

護人應具備之核心知識與技能，更為觀護工作邁向專業化與精緻化之重要指標。

（四）精簡純化觀護業務，降低案件負荷量，強化案件管理能力

如前所述，韓國保護觀察所的業務種類，主要有犯罪人監督、電子監控、藥物治療命令、調查、受講命令/治療命令及社會服務命令等六大項，保護觀察官並依法獨立執行法院之判決及社區處遇命令。反觀我國，各地方法院檢察署觀護人室的業務範圍，則除了保護管束案件執行外，尚有電子監控、法治教育、諮商輔導團體、義務勞務及社會勞動等，並有修復式司法、反賄選、社區生活營、暑期預防犯罪及各類試辦方案等，種類繁多。

此外，從員額數來看，韓國全國保護觀察官人數共 1,586 名（韓國人口總數近 5000 萬人），相較於我國觀護人人數共 221 名（臺灣人口總數約 2500 萬人），在換算人口密度後進行比較，韓國保護觀察官之數量密度，約為臺灣觀護人之 3.6 倍；亦即臺灣觀護人在總人口中之數量密度，約僅為韓國之 28%。再者，在案件負荷量方面，韓國平均每位保護觀察官案件負荷量約為 140 件，而我國平均每位觀護人案件負荷量約為 232 件（含保護管束案件、社會勞動案件、緩起訴案件及附條件緩刑案件），相較之下，我國觀護人之案件負荷量，約為韓國保護觀察官之 1.66 倍。

因此，在時間、經費與人力等資源有限的情形下，若欲提昇觀護工作之專業化與精緻化，除了可透過增加觀護人員額數之做法外，並可藉由精簡純化觀護業務，使觀護業務具備簡單明確的工作目標與內容，避免過度繁雜之工作種類排擠觀護核心業務；同時，亦可透過嚴格的假釋審查制度及調整轉向設計等措施，降低觀護人之案件負荷量，並強化觀護人對於不同案件進行個案管理之能力，使觀護人得以有較充足之時間與精力，發揮監督輔導功能，以防衛社會安全並降低個案再犯。

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

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係為專責科技設備監控之組織，相較於我國有關科技設備監控之業務，於 94 年開始實施，並自 100 年由居家監控擴及為 24 小時追蹤受監控者之執行模式，103 年全面實施及推廣以 GPS 定位受監控者之系統與設備，本業務實施迄今業有 9 年。臺高檢署自 97 年承接自法務部移轉之居家監控設備及系統，僅有設置調辦事觀護人一名，專責處理相關事務。雖每月受監控人數相較於韓國為少，但科技設備監控系統之業務及監控數量日趨增多，除線上執行之業務外，更積極瞭解 3G/4G、WiFi 等定位技術，以使設備更趨穩定，達到監控

目的。然而，韓國之專責組織及分工，是我國值得學習之對象；再者，受監控者違反監控命令之相關法律效果，迄今也未有明確具體之罰則，使得執行上頗有困境。針對我國科技設備監控業務，擬提出以下幾點建議：

（五）科技設備監控系統需 24 小時機房管理機制

韓國位置追跡中央管制中心係為專責科技設備監控之組織，除專責的三班制每班 6 人之值勤人員外，系統機房更有專責人員 24 小時全年無休地輪值。反觀我國，性侵害犯罪防治法雖實施 24 小時科技設備監控，系統服務之規模雖然不大，實際科技設備監控系統卻欠缺專業資訊人員輪值管理。

科技設備監控系統為因應 24 小時之監控，，難容許系統故障及中斷服務之情事發生，相關系統或通訊需具備高度穩固性使達到業務執行之目的。惟系統應有 24 小時維護及監管之機制，臺高檢署機房管理輪值僅有上班期間，假日或連假時均無人值班，如系統於假日發生故障需處理，另須個別通知管理人員，恐會有時效上之延遲。另考量高檢署人力，無法提供 24 小時機房輪值業務，若將系統硬體設備移置法務部資訊處機房，利用其 24 小時機房輪值機制，除可節約經費，不須另編列預算將機房委外 24 小時管理。

（六）科技設備監控系統需加強資料管理及資安防護

科技設備監控系統中有性侵害犯罪者個人資料、每日行蹤軌跡及相關科技設備監控事件，屬於重要個人資料，相較於韓國以「特殊犯罪者關於保護觀察及電子裝置安裝等相關法律」之專法規範科技設備監控訊號接收資料之保存、使用、廢棄管理事項。反觀我國，僅有「科技設備監控實施辦法」規劃相關執行原則，較欠缺相關資料管理機制；再者，有關資料保存之資安問題，因科技設備監控系統未置於法務部內網，自成一獨立系統，並自行以簡單防火牆、IPS 保護，資安防護較弱。隨著受監控者日益增多，機敏性資料隨之大幅增加，急需提升資安相關防護；獨立規劃該系統之資安防護，恐增加許多費用，而法務部資訊處已通過 ISMS 資訊安全認證，各項資安設備及技術優於臺高檢署及委外廠商，建議由法務部資訊處統籌規劃本系統資安事宜，以為周全。

（七）科技設備監控系統軟硬體需交由專業資訊人員處理

高檢署調辦事觀護人僅置一人，相較於韓國首爾以位置追跡中心之專責組織運作，組織人力有 119 名公務員，中心所長為保護觀察官，且有技術人員予以輔助，具備相當分工架構。高檢署調辦事觀護人除處理科技設備監控預算編列、線上告警事件之查證及相關契約履約管理外，還需督導地檢署第

一線執行相關問題排除之責任，而科技設備監控系統軟硬體採購、硬體上架、軟體改修等業務，已超過觀護人專業可以勝任，現以詢問資訊室科長及相關專業人員方式辦理，恐有因專業知識不足而致生疏漏之虞。相關軟硬體採購、程式設計、資訊安全、網路架構及系統開發等，宜交由法務部專業資訊人員處理，俾能使業務進行順利。

（八）科技設備監控命令違反之法律規劃及未來發展宜交由法務部統籌

受監控者違反相關監控命令之法效果，亦是執行受監控者的重要依據，現僅以違反保安處分執行法第 74 條之 1 之款項，用以告誡受監控者，使受監控者以不犯大錯，但小過不斷的方式，挑戰設備及制度之極限，且科技設備監控之毀損相關罰則，現僅以國有財產相關規定適用，較不能符合實際執行所需，建議需有相關法律規劃；再者，科技設備監控現為性侵害防治業務之其中一項獨立處遇，然僅有調辦事一名觀護人於高檢署處理相關業務，包含契約採購、線上問題排除及辦理科技設備監控系統及硬體之科技研究計劃等，建議科技設備監控之未來發展宜交由法務部統籌整體政策規劃，訂定相關組織或工作小組，使性侵害防治業務得以完整。

國立法務醫院

韓國國立法務醫院之如同監護處所，化學治療性侵害加害者係為亞洲第一個實施之國家。我國雖有意成立監護處所，但遲遲因社區民眾之反抗而無法成立專責組織，但以社會防衛或犯罪防治之觀點言之，相關法令業已訂定，惟欠缺權責組織逐步執行，該處之成立具備必要性。建議如下：

（九）國立法務醫院與社區居民良好互動，提升接受度

韓國國立法務醫院定期為當地居民身體健康檢查，當地居民至醫院看病不收費，甚至多用當地居民為院內員工，增加當地就業機會，故消弭民眾對監護處所之恐懼及焦慮。我國在設置監護處所時曾受到民眾抗拒，宜參考韓國作法以開放的態度及互惠的配套措施，可提升當地居民之接受度。

（十）性犯罪者治療程序及相關實施方式之參考借鏡。

化學治療為國內性侵害防治曾討論之議題，但我國目前仍未實施。值得一提的是，化學治療雖可降低性衝動，但心理治療卻宜優先考慮二者併行共同實施始見成效。我國身心治療僅針對心理層次，除少數醫院有陰莖體基測試儀可診斷戀

童癖之性疾患者，較少於治療過程中論及生理層次。有關於戀童癖之性疾患者再犯危險程度高，且侵害未成年者影響層度較廣，未來是否將化學治療納入身心治療範疇，韓國國立法務醫院的專責組織及運作方式之經驗與作法值得我國參考借鏡。

法務保護福址公團

我國更生保護會前身係「臺灣省司法保護會」，民國 35 年 11 月 11 日設立，56 年 7 月更名為「臺灣更生保護會」，受臺灣高等法院、臺灣省政府社會處及臺北市政府社會局監督，辦理臺灣省、臺北市及高雄市出獄人等保護工作，為財團法人組織的公益慈善團體。由於政府重視此項工作，司法行政部於 61 年以命令核定臺灣更生保護事業規則及其施行細則，並於六十四年三月起草更生保護法，經立法院審議通過後於 65 年 4 月 8 日由總統公布實施，臺灣更生保護會隨即於同年 11 月 11 日改組，依更生保護法第 4 條規定受司法行政部指揮監督，辦理更生保護事業。69 年 7 月 1 日院檢分隸，司法行政部改制為法務部，增設保護司，掌理更生保護業務之策進、規劃、指揮監督。

韓國自 1987 年設立更生保護會，並在 2009 年 3 月 27 日改名為「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現有功能結合更生保護、職業訓練場所、中途之家、社會福利…等，並在全國各地都有獨立的機構空間，算是相當成熟又完備的組織，特別是保護福祉公團能具體提供「居住」、「職訓」、「專業諮商輔導」等項目，這對更生人社會復歸是最具體且現實有益的援助。

針對我國更生保護業務，對照此次考察所視，並考量本國現況，擬提出以下建議：

（十一）發展一站式的就業輔導服務模式。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本身即具有「中途之家」的功能，且結合「職業技能訓練」，發展專門的職業技能訓練，甚至本次造訪的仁川福祉公團還有經營洗衣事業部。由於各支部職業訓練的項目已跟產業結合，或經過市場調查與評估，並以實際能在職訓後確實就業為導向，因此專業的職業訓練能就地生根，讓個案從「求助」到「職訓」到「就業」變成「一站式」、「一貫化」的媒合與服務，另外「常態化」營運，也使得該項職業訓練在發展及應用上能不斷累積經驗，精益求精，使營運更趨於專業與實用。

（十二）「更生」與「就業協助」結合地方資源，重質不重量，特色化經營。

我國更生保護會在更生人的就業與各項協助上，主要包含「就業服務站」之資源與部分熱心公益的企業及社會人士協助，雖然我國更生保護會於各地檢署設有辦公室，不如韓國有自己的機構大樓及政府資金的大量挹注，但我國若能穩定結合在地資源，專注於發展某些特色的職業訓練計畫，常態經營，重質不重量，一方面在更生保護就業協助的實質上能夠具體有效，再者，礙於我國人力資源有限、經費募集不易，特色化的經營將力量集中，反而更能做出成效，更發揮更生保護的實質效益。

附 錄

一、保護觀察等相關法律[3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보호관찰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 12590 호, 2014.5.20.,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개정 2009.5.28.>
全文共 101 條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受講) 및 갱생보호 (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2 조 (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9.5.28.]

제 3 조 (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 59 조의 2 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 62 조의 2 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 73 조의 2 또는 이 법 제 25 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 32 조제 1 항제 4 호 및 제 5 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 (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6] 本法為韓國社區矯治基本法

1. 「형법」 제 62 조의 2 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 32 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09.5.28.]

제 4 조(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2 장 보호관찰기관 <개정 2009.5.28.>

제 1 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개정 2009.5.28.>

제 5 조(설치)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6 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43 조제 3 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 7 조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 명 이상 9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 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전문개정 2009.5.28.]

제 8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9 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9.5.28.]

제 10 조 (위원의 신분 등)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 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26 조의 5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7.>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11 조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 6 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12 조 (의결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13 조 (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2 절 보호관찰소 <개정 2009.5.28.>

제 14 조 (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15 조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2. 갱생보호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 (善導) 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4. 제 18 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5. 범죄예방활동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 16 조 (보호관찰관) ① 보호관찰소에는 제 15 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둔다.

②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17 조 (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18 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3 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 1 절 판결 전 조사 <개정 2009.5.28.>

제 19 조 (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59 조의 2 및 제 62 조의 2 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 1 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19 조의 2(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소년법」 제 12 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6.]

제 2 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 20 조 (판결의 통지 등) ① 법원은 「형법」 제 59 조의 2 또는 제 62 조의 2 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 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3 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개정 2009.5.28.>

제 21 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 65 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그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 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22 조(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법」 제 65 조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제 26 조 또는 제 27 조에 따라 통지받은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23 조(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또는 보호소년에 대한 퇴원·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 21 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가석방·퇴원 및 임시퇴원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소년수형자의 가석방이 적절한지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24 조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22 조에 따라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보호관찰심사를 할 때에는 제 28 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25 조 (법무부장관의 허가) 심사위원회는 제 23 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 24 조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 4 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개정 2009.5.28.>

제 26 조 (환경조사) ① 수용기관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 32 조제 1 항제 8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이하 "수용자"라 한다) 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면담하거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 (審問) 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27 조(환경개선활동)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 26 조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족·관계인의 협력을 받아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수용기관의 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28 조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인(이하 "성인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21 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해당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받으면 해당 성인수형자를 면담하여 직접 제 26 조제 2 항 전단에 규정된 사항, 석방 후의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이하 "보호관찰 사안조사"라 한다)를 하거나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성인수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자료를 보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따라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위하여 성인수형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5 절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 29 조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30 조 (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1 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3. 가석방자:「형법」제 73 조의 2 또는「소년법」제 66 조에 규정된 기간
4. 임시퇴원자 : 퇴원일부터 6 개월 이상 2 년 이하의 범위에서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소년법」 제 32 조제 1 항제 4 호 및 제 5 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전문개정 2009.5.28.]

제 31 조 (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32 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 (常住) 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 (移轉) 하거나 1 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 2 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 (科) 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33 조 (지도·감독)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한다.

② 제 1 항의 지도·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 32 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전문개정 2009.5.28.]

제 33 조의 2 (분류처우)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분류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제 34 조 (원호)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조(自助)의 노력을 할 때에는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援護)를 한다.

② 제 1 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소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3. 환경의 개선
4.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전문개정 2009.5.28.]

제 35 조 (응급구호)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36 조 (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 34 조에 따른 원호와 제 35 조에 따른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 67 조제 1 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 71 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숙식 제공이나 그 밖의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 37 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 1 항과 제 2 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38 조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 32 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39 조 (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 32 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 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 1 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40 조(긴급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 32 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 39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 39 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 2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41 조(구인 기간)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 39 조 또는 제 40 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제 42 조에 따라 유치(留置)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관찰소 등에 인치(引致)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42 조(유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 39 조 또는 제 40 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1. 제 47 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失效）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2. 제 48 조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
3. 제 49 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② 제 1 항에 따른 유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인치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 시간 이내에 제 1 항 각 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 1 항제 1 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8 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43 조(유치기간) ① 제 42 조에 따른 유치의 기간은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 일로 한다.

② 법원은 제 42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3 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리(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급마다 20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 4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44 조（유치의 해제）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1. 검사가 제 47 조제 1 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2. 법원이 제 47 조제 1 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3. 심사위원회가 제 48 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4. 법무부장관이 제 48 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원이 제 49 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 45 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 42 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45 조의 2(보호장구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 방지, 항거 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전자충격기
4. 가스총

②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장구의 사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제 46 조(준용 규정)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72 조, 제 75 조, 제 82 조, 제 83 조, 제 85 조제 1 항·제 3 항·제 4 항, 제 86 조, 제 87 조, 제 89 조, 제 204 조, 제 214 조의 2 및 제 214 조의 3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6 절 보호관찰의 종료 <개정 2009.5.28.>

제 47 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형법」 제 61 조제 2 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 64 조제 2 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② 제 1 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335 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48 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제 32 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49 조 (보호처분의 변경)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 32 조제 1 항제 4 호 또는 제 5 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 32 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 세 이상인 경우에도「소년법」제 2 조 및 제 38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 2 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50 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①「소년법」제 60 조제 1 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 66 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제 51 조 (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
2. 「형법」 제 61 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같은 법 제 63 조 또는 제 64 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3. 제 48 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4. 제 49 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5. 제 50 조에 따른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6.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7. 제 53 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43 조제 1 항의 나이가 된 때

[전문개정 2009.5.28.]

제 52 조(임시해제)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

②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53 조(보호관찰의 정지)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한 사람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정지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 정지 중인 사람이 제 39 조 또는 제 40 조에 따라 구인된 경우에는 구인된 날에 정지해제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④ 형기 또는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제 7 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개정 2009.5.28.>

제 54 조 (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8.]

제 55 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55 조의 2(기부금품의 접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제 56 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 2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57 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58 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 (제 28 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19 조부터 제 12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4 장 사회봉사 및 수강 <개정 2009.5.28.>

제 59 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형법」 제 62 조의 2 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 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 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 1 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60 조 (판결의 통지 등) ① 법원은 「형법」 제 62 조의 2 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 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법원의 장은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61 조 (사회봉사 · 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교화·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62 조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 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 2 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④ 제 2 항과 제 3 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63 조(사회봉사・수강의 종료) 사회봉사·수강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3. 「형법」 제 64 조제 2 항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때
4.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5. 제 49 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전문개정 2009.5.28.]

제 64 조 (준용 규정) ①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 34 조부터 제 36 조까지 및 제 54 조부터 제 57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 37 조부터 제 45 조까지, 제 45 조의 2, 제 46 조, 제 47 조 및 제 49 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5 장 갱생보호 <개정 2009.5.28.>

제 1 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개정 2009.5.28.>

제 65 조 (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② 제 1 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 71 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 67 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 1 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 3 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66 조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 67 조제 1 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 71 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 2 항에 따라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2 절 갱생보호사업자 <개정 2009.5.28.>

제 67 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①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68 조 (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3.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전문개정 2009.5.28.]

제 69 조(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70 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 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 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 69 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 70 조의 2 (청문) 법무부장관은 제 70 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09.5.28.]

제 3 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개정 2008.12.26.>

제 71 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 72 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73 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와 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74 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지소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75 조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76 조 (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 이사장 1 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 명을 둔다. <개정 2014.5.20.>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4.5.20.>

③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77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78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5.28.]

제 79 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 78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9.5.28.]

제 80 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81 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任免)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82 조 (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갱생보호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4.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9.5.28.]

제 83 조 (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果實)
4.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09.5.28.]

제 84 조 (공단의 사업계획 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85 조 (기부금품의 보고)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기증받은 금품이 있을 때에는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86 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87 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전문개정 2009.5.28.]

제 88 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89 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 82 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90 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91 조 (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 (補塡) 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92 조 (준용 규정)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93 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제 4 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09.5.28.>

제 94 조 (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95 조 (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9.5.28.]

제 96 조 (수익사업)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 97 조 (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을 지휘·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98 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 6 장 벌칙 <개정 2009.5.28.>

제 99 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3. 제 70 조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 96 조제 2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5.28.]

제 100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99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 101 조 (과태료) ① 제 98 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8.12.26.]

二、保護觀察等相關施行令[3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 25731 호, 2014.11.19., 일부개정]
全文共 51 條

三、對於特定犯罪者的保護觀察與電子裝置附著（使用）相關法律[38]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6.19.] [법률 제 11558 호, 2012.12.18., 일부개정]
全文共 39 條

四、對於特定犯罪者的保護觀察與電子裝置附著（使用）相關施行令[39]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시행령
[시행 2014.6.19.] [대통령령 제 24549 호, 2013.5.31., 일부개정]
全文共 29 條

五、性暴力犯罪者的性衝動藥物治療相關法律[4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 11556 호, 2012.12.18., 타법개정]
全文共 35 條

六、性暴力犯罪者的性衝動藥物治療相關施行令[4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 23488 호, 2012.1.6., 타법개정]
全文共 30 條

---

[37] 限於篇幅，完整條文請見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63083#0000
[38] 限於篇幅，完整條文請見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0833#0000
[39] 限於篇幅，完整條文請見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40705#0000
[40] 限於篇幅，完整條文請見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0823#0000
[41] 限於篇幅，完整條文請見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1419#0000

七、法務保護福祉公團相關法律[42]

（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保護觀察等相關法律」[43]

제 1 조（목적）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국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범한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 65 조（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 숙식제공 ② 여비지급 ③ 생업도구 •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④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⑤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⑥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보호에 부수하는 선행지도

제 94 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二）「사회복지사업법」「社會福祉事業法」

‘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의 개정을 통해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

제 2 조（정의）

이 법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숙박 등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42] 請見法務保護福祉公團官網：http：//koreha.or.kr/intro/purpose

[43] 以下網頁進去以後，點左上角‘본문’就可看到此法全文，請見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153969&viewCls=lsRvsDocInfoR#0000
關於”韓國法務福祉公團”的條文請拉到第六章的 101 條和附則（6 장 101 조와 부칙），但是詳細的地方需要看附則的部分，附則中提到此法修正前後的說法。第 4 條（韓國更生保護公團相關經過處置）。韓國更生保護公團乃依據此法第 271 條第 3 項中的「韓國更生保護公團」改為「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三）국제연합（UN）회의 결의문（1960） 聯合國（UN）會議決議文（1960）
1960 년 제 2 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 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 1 차적 책무」임을 천명

（四）（刑法）형법 제 62 조의 2 제 1 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八、社會服務相關法律[44]

제 4 장 사회봉사 및 수강 <개정 2009.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 59 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형법」제 62 조의 2 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 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 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 1 항의 경우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 60 조(판결의 통지 등) ① 법원은「형법」제 62 조의 2 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 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법원의 장은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 61 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44] 請參閱第 4 章社會服務與受講命令一節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교화·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 62 조(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 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 2 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④ 제 2 항과 제 3 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 63 조(사회봉사·수강의 종료) 사회봉사·수강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3. 「형법」 제 64 조제 2 항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때
4.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5. 제 49 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전문개정 2009.5.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 64 조(준용 규정) ①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 34 조부터 제 36 조까지 및 제 54 조부터 제 57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 37 조부터 제 45 조까지, 제 45 조의 2, 제 46 조, 제 47 조 및 제 49 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